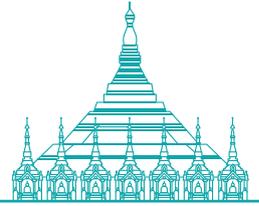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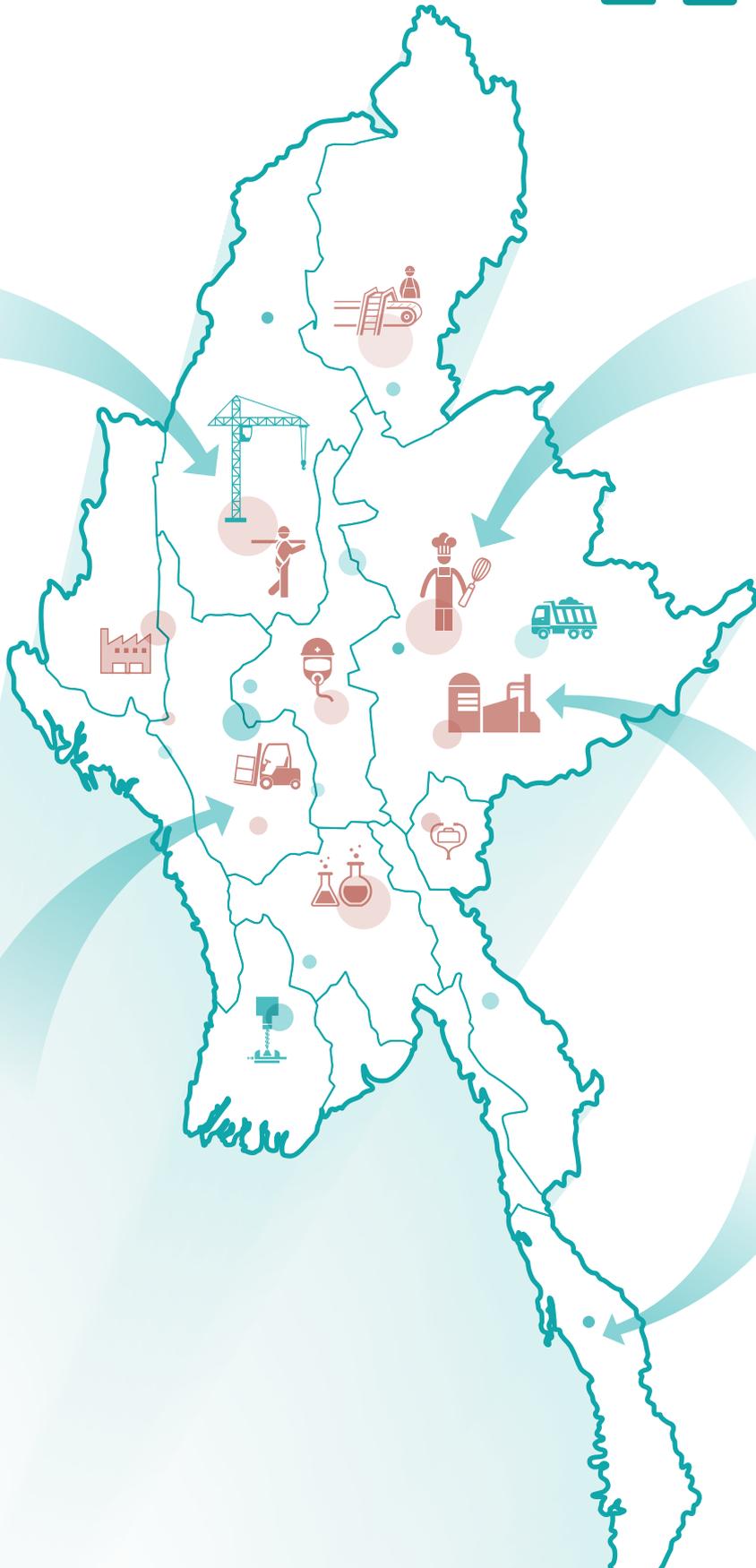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



미얀마편

2019





본 책자는 미얀마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체와 미얀마로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지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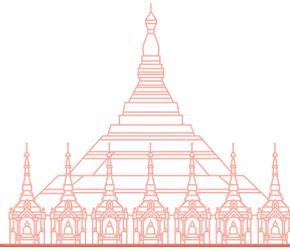
첨부된 노동법과 관련 법규 및 규칙 등의 영역본은 미얀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이나 국문번역은 동 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한 것으로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은 법률해석에 따른 어떤 법적소송, 민사 또는 행정소송 등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 및 해설은 미얀마 소재의 관련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책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국외안전보건 정보에서 전자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센터



목 차

1	국가현황	
	가. 국가개요	1
	나. 한국과의 관계	3
	다.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 현황	6
	라. 국내 산업계의 미얀마 노동인력 활용	6
2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조직체계	
	가. 미얀마 정부	8
	나. 노동이민인구부	9
	다. 그 밖의 정부부처 및 기관	14
3	산업안전보건 감독	
	가. 감독체계	18
	나. 인적자원	20
	다. 감독방법 및 유형	20
4	미얀마 노동관련법	
	가. 미얀마 노동법 개요	24
	나. 그 외 관련 법률	26
5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체계	
	가. 법령체계	28
	나. 공장법 1951	29
	다. 적용범위 및 예외	31
	라. 청소년 고용	32
	마. 상점및시설물법 2016	33
	바. 미얀마가 비준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ILO 협약	34
	사.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관련 법률	35
	아. 산업안전보건관련 상시명령	39
6	산업재해	
	가. 산업재해	42
	나. 업무상 사고 및 질병기록 신고체계	43
	다. 재해통계	44
	라. 업무상 상해 및 질병배상	46
	 [부록]	
	1. 행정기관 연락처	50
	2. 개정 노동법 전문	52
	3. 미얀마 공휴일	70



1

국가현황

- 가. 국가개요
- 나. 한국과의 관계
- 다.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 현황
- 라. 국내 산업계의 미얀마 노동인력 활용



① 국가현황



가. 국가개요

공식국명이 미얀마 연방공화국인 미얀마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다. 676,578km²에 달하는 영토를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잠재력이 매우 큰 나라다. 총 인구는 2018년을 기준으로 5,283만 명이며, 그 중 48.2%가 남성, 51.8%가 여성이다. 미얀마는 젊은 나라로, 인구의 28.61%가 15세 이하이며, 15~29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반면, 60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9.06%에 불과하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높은 문자해독능력이 경제 성장, 저축 및 투자 증가를 위한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 26년간 모든 산업시설을 국유화하고 민간의 대외무역을 금지해오다 지난 1988년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했으나 규모가 큰 공장과 주요 산업은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상태였다. 2011년 4월,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 독점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미얀마 경제를 이끌고 있는 주력 산업은 농업, 광업, 임업 등 1차 산업이며, 특히 해상 천연 가스전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자원개발 분야가 전통적인 농수산업, 임업 등과 함께 미얀마 전체 산업을 이끌고 있다.

인구의 대다수(70%)가 시골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약 200만 명이 해외, 주로 태국에 거주하고 있다. 도시 지역의 출산률은 2005년 여성(15세~49세) 1인당 2.11명에서 2014년 1.91명으로 감소했다.

미얀마의 근로 연령 인구는 3,39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인구의 65.8%에 해당된다. 근로 연령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54%, 남성은 46%이다. 미얀마 2015년 노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미얀마 전체 고용인구는 2,180만 명이며, 이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43.1%로 여성의 고용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출처 : 국제노동기구(ILO),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국가개황

구분	내용
국가명	미얀마연방공화국(구 버마)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Burma)]
면적	676,578km ² (한반도의 약 3.5배, 남한의 약 6.8배)
수도	네피도(Nay Pyi Taw) (2006년 양곤에서 이전)
인구	52,830,000명(2018년 기준, IMF)
1인당 GDP	1,298달러(2018년 기준, IMF)
경제성장률	6.7%(2018년 기준, IMF)
통화	짜트(MMK) (1USD = 약 1,480 MMK) (2018년 평균, 세계은행)
민족(인종)	버마족(70%), 소수족(산, 카렌, 카친, 몬, 친족 등) 130여 종족(25%), 기타(중국계 3%, 인도계 2%)
언어	미얀마어, 기타 소수민족 고유어
종교	불교(89.4%), 기독교(4.9%), 이슬람교(3.9%), 힌두교(0.5%), 토속신앙(1.2%), 기타(0.1%)
기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대성 몬순기후(연평균 기온 27.08℃, 연평균 강우량 2,513mm) - 여름: 2월말 ~ 5월중순 - 우기: 5월하순 ~ 10월말(거의 매일 비) - 겨울: 11월초 ~ 2월중순(한국 초가를 날씨와 유사)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윈 민(Win Myint) (2018. 3. 30. 취임) • 국가고문: 아웅 산 수치 • 부통령: 민트 스웨(제1부통령), 헨리 밴 티유(제2부통령)
국경일	1월 4일 (독립기념일, 영국으로부터 1948년 독립)
시차	-2시간 30분(우리나라보다 2시간 30분 느림)

-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ILO, IMF, 외교부

미얀마 국기



미얀마 위치



1. 국가개황

2.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조직체계

3. 산업안전보건 감독

4. 미얀마 노동관련법

5.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체계

6. 산업제어

부록



나. 한국과의 관계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 국교수립일: 1961. 7. 10.(영사급) 1975. 5. 16.(대사급)
- 한국교민수: 3,860명
- 협정체결 현황

협정명	체결일자	발효내용
무역협정	1964년 (1967년 개정)	무역에 대한 협정
뉴스교환 협정	1972년	뉴스 교환에 대한 협정
항공 협정	1978년	항공 협정
입업 약정	1999년	입업 관련 약정
이중과세방지협정	2002년	양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국내에서 공제되도록 하여 이중과세 방지
서비스무역 협정	2007년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외교관 및 특별여권 비자면제협정	2011년	외교관 및 특별여권 비자 면제에 관한 협정
무상원조 기본 협정	2012년	양국 정부간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 협정
투자보장 협정	2014년	양국 진출 상대 투자자 재산권 수용 등 투자자 보호법 발효

한-미얀마 교역현황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출	800	660	761	573	534
수입	580	506	459	463	537
무역수지	220	154	302	110	-3
교역규모	1,380	1,166	1,220	1,036	1,071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주요 현안

○ 정치

2012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은 29년만의 정상 방문으로 미얀마 국민방문을 했으며 이에, 같은 해 10월, 떼인 세인 대통령의 국민 방한이 있었다. 2014년 10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 2014년 1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로 떼인 세인 대통령의 방한이 이어지면서 한-미얀마 우호협력 관계의 발전 기반이 강화되었다.

석유, 가스 등 풍부한 자원과 14억 인구의 중국과 인도를 양쪽으로 끼고 있는 미얀마는 ‘아시아의 마지막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메콩 국가로, 한국에 더 우호적으로 미얀마 정부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처 여사 집권 후 일본, 중국도 방문하기 전 미얀마를 방문한 최고의 인사다. 중국의 투자에 대해서는 ‘약탈적 투자’라는 뿌리깊은 경계심과 의구심을 갖고 있고,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적 관점에 기반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부정적 위험’요소가 없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평가된다.

2019년 11월 26일,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웅산 수처 국가고문간 한-미얀마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메콩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양국간 교류 협력 확충을 다짐했다.

○ 경제

미얀마는 2018년 기준 한국의 61위 무역국이며, 2018년 무역 규모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10.7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은 2017년 대비 6.8% 감소한 5.3억 달러로, 주요 수입품목은 수송기계·산업기계·철강·철물·석유제품 등이며 수입은 2017년 대비 15.9% 증가한 5.4억 달러로, 주요 수입품목은 의류·농산물·신변잡화·임산물이며, 신발·신발 부분품 등이다.



2019년 3월말 기준, 우리의 대 미얀마 총 투자금액은 신고기준으로 58억달러이며 신고건 수는 1,124건, 신규법인은 425개이다.

- 출처: 한국무역협회, 외교부

☑ 주요 경제지표 (2014~2018, IMF)

경제지표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	7.99	6.99	5.89	6.84	-
명목GDP (십억\$)	65.58	59.49	63.25	67.28	71.54
정부부채 (% of GDP)	29.91	34.54	35.75	33.64	33.2
물가상승률 (%)	5.11	10.04	6.77	4.03	6
실업률 (%)	4	4	4	4	4
수출액 (백만\$)	11,299.2	11,431.8	11,819.85	-	-
환율 (지국통화, kyats)	984.35	1,162.62	1,234.87	1,360.36	1,429.81



다. 우리기업의 시장진출 현황

○ 우리기업 진출 현황

약 200여 개의 우리 기업이 미얀마에서 운영중이며, 이중 봉제 관련업체가 120여 개로 가장 많고, 대기업 계열사 및 사무소 20여 개, 금융업종 13개, 건설·인프라 관련 10여 개사 등이다.

미얀마 진출 기업중 약 60%가 낮은 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한 봉제기업이며, 포스코·롯데·CJ등 20여 개의 대기업이 진출해 있다. 금융업은 은행·소액대출·보험 등 현재 18개 금융기관이 법인·지점·현지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라. 국내 산업계의 미얀마 노동인력 활용

2008년부터 고용허가제(EPS)를 통한 미얀마 인력 도입체제를 구축하여 미얀마 근로자는 기본 3년, 최대 9년 8개월까지 한국에서 근로가 가능하다. 2018년 기준으로 미얀마 근로자 약 2만 5천여 명이 국내에 취업중이다.

※ 연도별 고용허가제 도입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8~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전체	437,544	51,556	51,019	59,822	50,937	53,855	704,733
미얀마	11,878	4,482	4,469	5,721	5,388	6,378	38,316
비중	2.7	8.7	8.7	9.6	10.6	11.8	5.4



2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조직체계

- 가. 미얀마 정부
- 나. 노동이민인구부
- 다. 그 밖의 정부부처 및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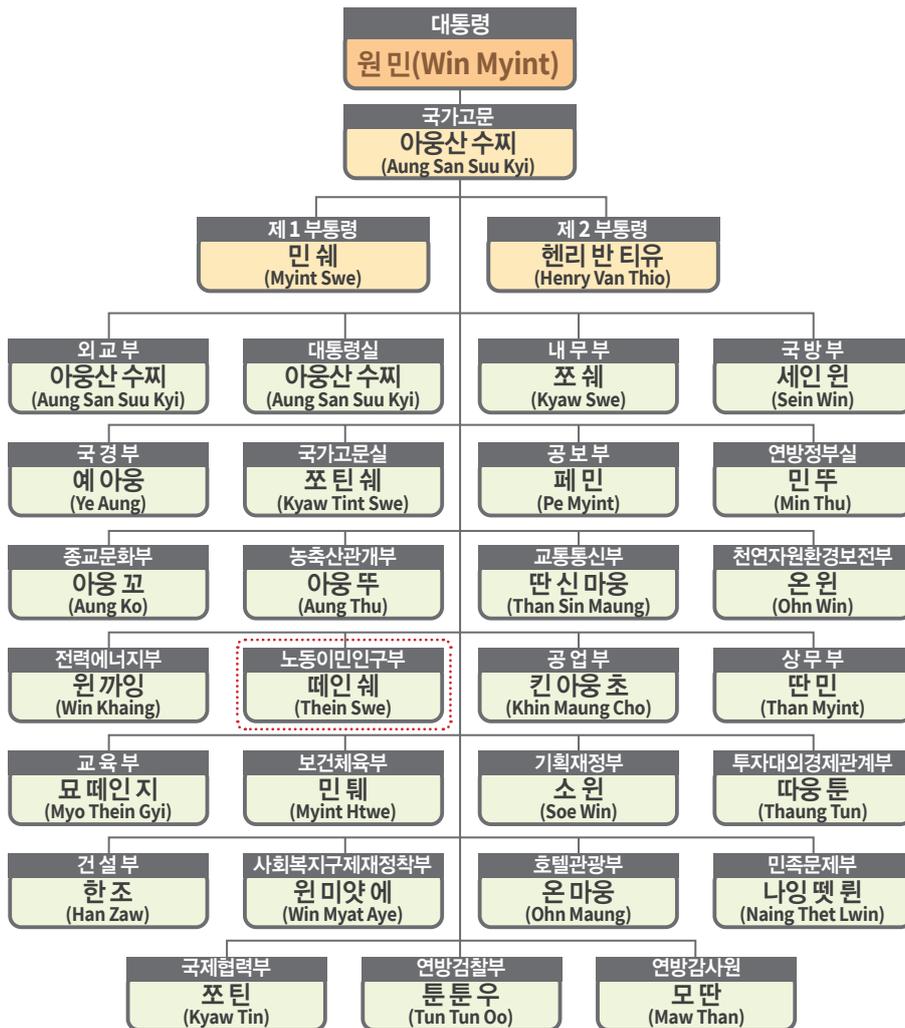
2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조직 체계



가. 미얀마 정부

- 미얀마 정부는 대통령중심제로, 대통령은 국가(연방)원수겸 행정수반으로, 국가를 대표하며 (헌법 제57조) 국내의 그 누구보다도 서열상 우선한다. 정부조직은 25개 부처와 연방경찰청 (법무부), 연방감사원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노동이민인구부(MOLIP, Ministry of Labour, Immigration and Population) 산하 공장및일반노동법감독과 (FGLLID, Factory and General Labour Laws Inspection Department)에서 총괄한다.

정부조직도



1. 국가원형

2.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조직체계

3. 산업안전보건 감독

4. 미얀마 노동관련법

5.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체계

6. 산업제어

부록



나. 노동이민인구부

○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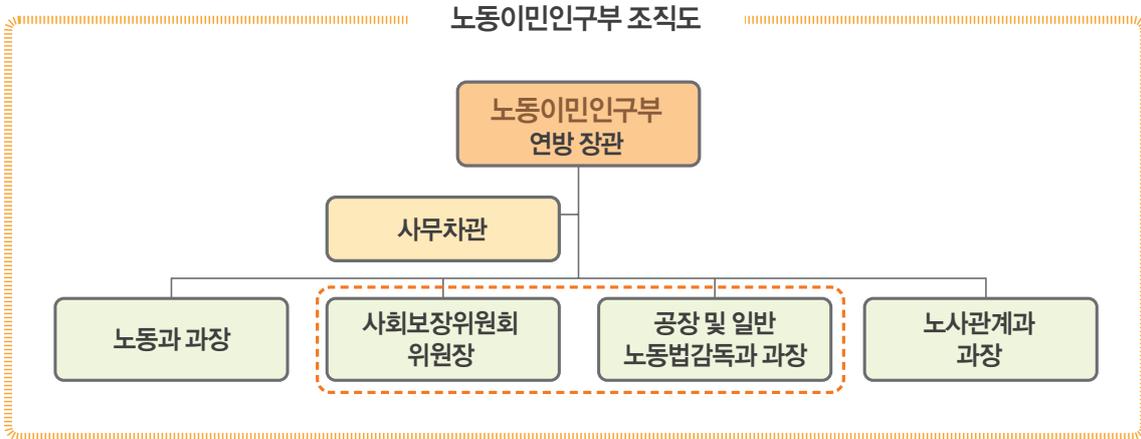
노동이민인구부는 미얀마의 노동, 사회복지 문제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이다.

노동이민인구부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정부, 사용자, 근로자 3자 사이의 건전한 관계 구축을 통해 평화롭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 (2) 노동법에 따른 수당 지급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을 집행한다.
- (3) 산업안전을 촉진시키고,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을 줄인다.
- (4) 국내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안전한 이주를 보장한다.
- (5) 노동인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훈련을 실시한다.
- (6)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사회적 보호 및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시행한다.
- (7) 노동법에 따라 노동분쟁을 해결한다.
- (8) 노동문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노동시장 정보를 취합, 분석한다.
- (9) 국제적·지역적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한다.
- (10)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숙련된 인적 자원의 지원을 받아 이민절차, 신분증발급, 주민등록 절차를 운영하고, 인구조사를 실시한다.
- (11) 국가 정책 및 주 지침을 시행한다.

노동인구부는 노동문제와 관련된 다음 4개 부서를 두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산업안전보건관련 법령 준수, 증진,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공장및일반노동법 감독과(FGLLID, Factory and General Labour Law Inspection Department)와 산재로 인한 상해, 사망, 질병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사회보장위원회(SSB, Social Security Board)에서 담당한다.

○ 공장 및 일반노동법감독과(FGLLID)

산업안전보건 관련 활동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기관이다. 노동감독, 특히 노동감독을 통한 사업장 위험요소 모니터링과 관계 법령 집행은 노동이민인구부가 담당하는 중요한 업무중 하나다.

여러 공공기관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미얀마 공장근로자의 안전, 보건, 복지를 보호하는 관련 법령을 집행할 주된 책임은 공장및일반노동법감독과 공장감독관에게 있다.

공장및일반노동법감독과의 주된 기능은 노동법과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집행하고 산업안전 보건관련 교육훈련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장및일반노동법감독과의 주요 목표는 현행 노동관련 법률 체계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보장된 법적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공장및일반노동법감독과의 책임자는 과장이며, 1명의 부과장을 두고 있다. 부서는 3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공장감독

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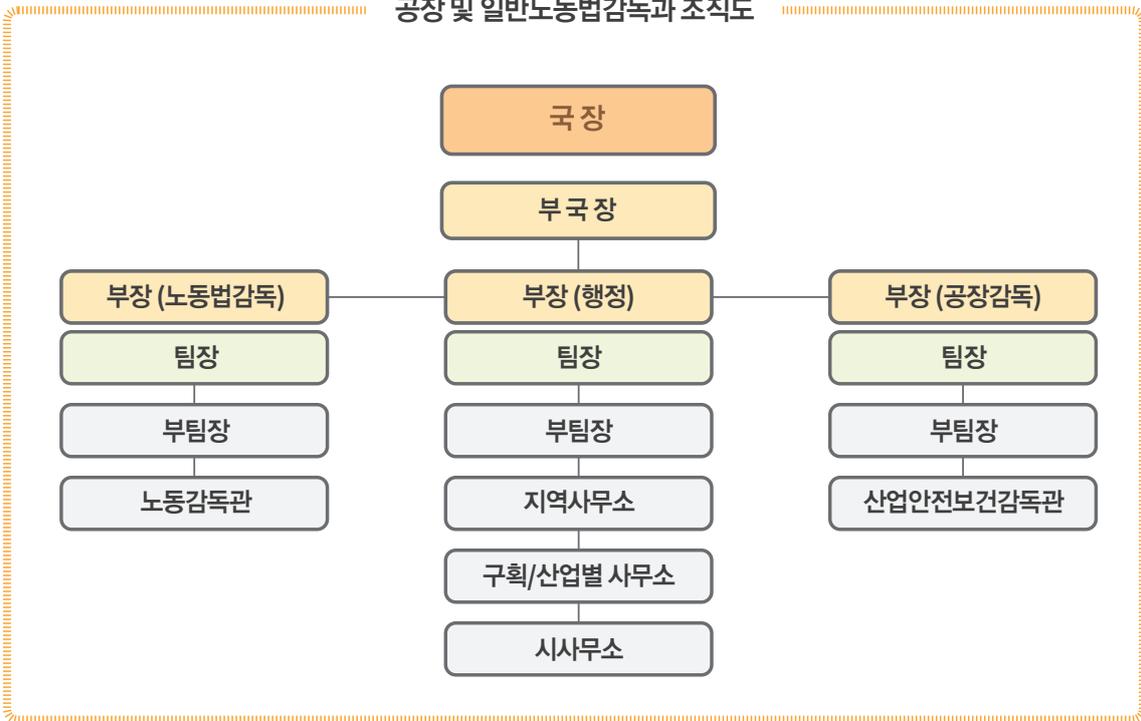
일반노동법감독



공장감독과는 안전, 보건, 복지문제를 다루며, 일반노동법감독과는 주로 초과근무, 임금, 근로시간, 휴가와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2017년을 기준으로 총 502명(간부급 173명, 일반직 329명) 공장및일반노동법감독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연예산은 20억 7,100짚이다. 공장및일반노동법감독과에는 총 205명의 노동 감독관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중 105명이 산업안전보건 감독관(공장 감독관), 100명이 일반노동법 관련 사안 감독관(일반노동법 감독관)이다.

공장 및 일반노동법감독과 조직도



행정주, 종족주, 지구단위, 산업부문 및 특별경제구역 단위, 군 단위 사무실을 총 83개소 운영하고 있다. 1951 공장법, 2016 상점및시설물법에 따라 공장, 상업시설물, 상점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 보건 감독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을 집행하며, 근로시간, 임금, 아동청소년 고용을 포함한 고용 및 노동조건에 관련된 법령을 집행하는 역할도 한다.

공장및일반노동법감독과는 사업장 단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립을 장려하고, 설립된 위원회에 대한 기술적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협력을 지원 하고, 위험평가를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 교육훈련 진행 상황을 감독한다. 2017년 6월까지 공장 및 일반노동감독과의 지원으로 총 1,130개의 사업장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교육훈련도 실시하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매년 산업안전보건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공장및일반노동감독과의 업무에 포함된다.

FGLLID의 목적
근로자들의 노동관계 법률에 명시된 법적 권리를 항시적으로 완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킨다

FGLLID의 기능

- 노동법 집행
- 산업안전보건 훈련 및 자문서비스 제공

FGLLID가 집행하는 주요 법률

- 공장법 1951
- 유전(노동 및 복지)법
- 공장(응급조치) 지침
- 상가 및 시설물법
- 휴식 및 휴가법
- 임금법
- 쟁의행위로 인해 지연된 근로자 현금지급에 대한 배상에 관한 규칙
- 담배 및 관련 산업 최저임금 명령
- 정미업 최저임금 명령

FGLLID가 집행하는 주요 규칙

- 위험산업(납) 규칙
- 위험산업(탄산수) 규칙
- 위험산업(셀룰로오스 도포) 규칙
- 위험산업(산업블래스팅) 규칙
- 위험산업(크롬) 규칙
- 위험산업(고무) 규칙
- 위험산업(기타) 규칙

○ 사회보장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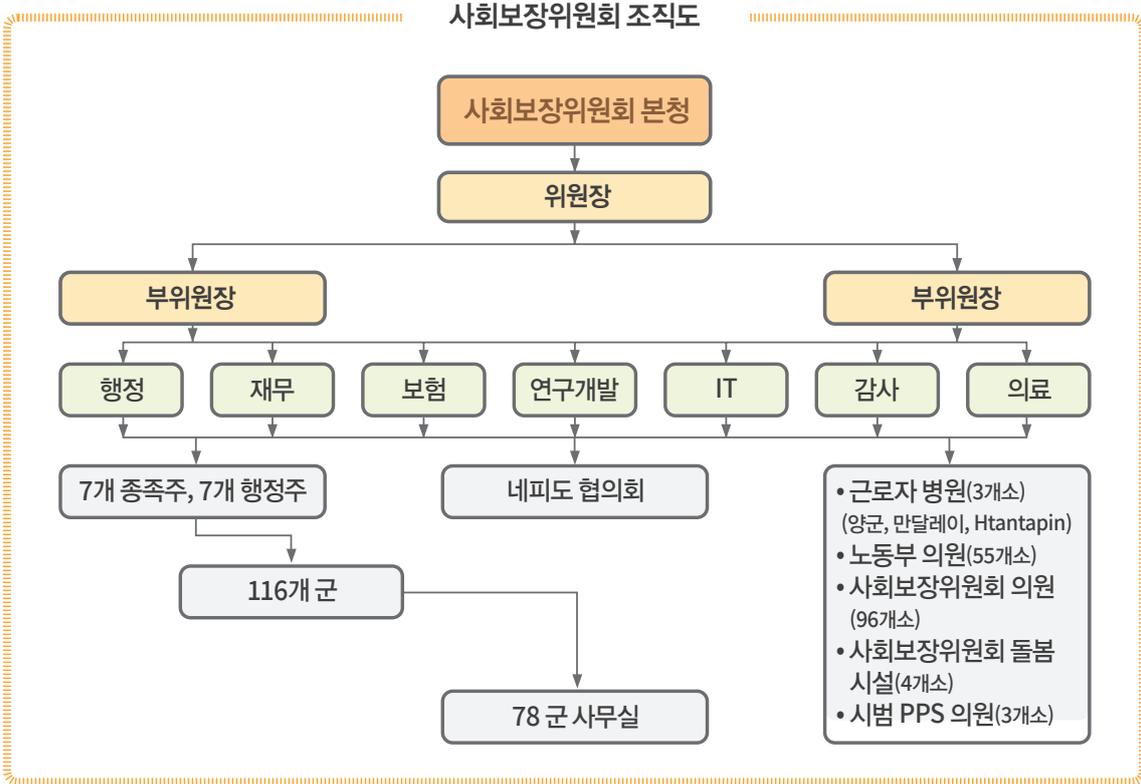
사회보장위원회는 업무상 상해보험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할 책임을 지고 있다.

사회보장법 2012 5조에 명시된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개발 프로그램 및 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 (2) 보건증진, 산업보건,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도록 한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이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각각의 사회보장 제도를 관리하는 7개 부서와 78개 군사무실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이민인구부는 수도 네피도에 위치해 있으며, 군 단위 사무실을 두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그 밖의 정부부처, 사용자단체, 근로자 단체와의 조율 과정에도 참여한다.

☑ [표] 노동이민인구부 산업안전보건 협력기관

노동이민인구부(주무 기관)				
규제 및 시행 기관	교육 연구 기관	보건사회복지기관	보건사회복지기관	시행 지원 기관
그 밖의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DRI) • 보건체육부 (OEHD) • 산업부 • 노동이민인구부 (공장및일반노동법감독과) 연구실 협분과 • 농축산관개부 (DO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체육부 (OEHD) • 노동이민인구부 (사회보장위원회) • 민간 의료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체육부 (OEHD) • 노동이민인구부(공장 및 일반 노동법감독과) (사회보장위원회) • 기획재정부 (CS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 단체 • 근로자 단체 • 미안마공학협회 (MES) • 민간 조직

1. 국가 현황

2.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조직체계

3. 법적체계 및 노동법

4. 산업안전보건관련법

5. 산업제어

부록



다. 그 밖의 정부 부처 및 기관

○ 산업부

(1) 산업감독검사국

산업감독검사국(DISI)은 산업부 산하 부서중 하나다. 산업감독검사국은 중소기업을 위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기술시장 진입 및 금융지원
- 현행법에 따른 민간 공업기업 등록
-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보일러 및 전기설비 안전검사
- 공업부문 사업장 조사
- 환경보호

산업감독검사국은 모든 종족주·행정주 주도에 산업감독검사국 지방사무실을 두고 있다
산업감독검사국의 장은 국장이며, 산업감독검사국의 업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국장에게 있다.
산업감독검사국에는 3명의 부국장이 있다.

(2) 보일러검사과

보일러검사과의 주요 기능은

- 보일러법 적용 대상 보일러의 안전 증진을 위한 연례검사 실시
- 보일러 사용 면허 발급

보일러검사과는 국제 기준에 따라 보일러의 설계, 설치, 제조, 수입을 관리한다. 보일러검사과는 그 밖에도 보일러 운용자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보일러의 폭발, 손상, 그로 인한 사람 또는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심화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3) 전기검사과

전기검사과는 전기법(2014)과 관련 규칙(1985)에 따라 민간 기업, 협동조합, 공공부문의 발전, 송전, 배전시설을 점검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전기검사과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전기관련 기업 및 장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 고압, 저압 가동상태, 공공건물 내부 배선, 배터리 충전기·히터·용접기·발전기·파워미터 등과 같은 전기장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고압선, 변전소 점검, 전기안전 인증서 발급
- 발전기의 발전 및 가동상태 점검, 발전 및 배전등록 인증서 발급
- 자격을 갖춘 자에게 전기전문가 자격증 발급
-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기준에 따른 시험을 거쳐 국내외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적합성 인증서, 전기 안전 인증서 발급

○ 천연자원환경보전부 광산과

광산과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 미얀마 광산법에 따른 광산 행정처리
- 광물 보존
- 광산근로자의 안전, 보건, 복지
- 광산 감독
- 광산 관련 환경 관리

광산과 과장은 미얀마 광산법에 따라 수석광산감독관 직을 겸한다. 광산과 과장은 광산업 허가 신청을 심사하고 허가를 발급한다. 광산과는 해외 및 국내 자본이 투자된 광산을 모두 관할하며, 광산 정책 시행을 위한 기획 및 데이터베이스의 역할도 담당한다.

○ 농축산관개부

(1) 농업과

농업과(DOA)의 장은 과장이며, 과장의 지휘아래 15개 분과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농업과는 농업 분야의 안전보건을 관장하며 특히 살충제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2) 살충제등록위원회

2017년 2월 17일, 정부의 승인을 거쳐 농축산관개부 고시 제11/2017호를 통해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관계 부처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살충제기술위원회의 지원을 받는다.

또한 작물보호분과 산하의 살충제분석연구소는 살충제 품질관리, 잔류물질 분석 등을 통해 살충제 등록위원회를 기술적으로 지원한다.

- 1. 국가 현황
- 2.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조직체계
- 3. 법적체계 및 노동법
- 4. 산업안전보건관련법
- 5. 산업재해
- 부록



○ 보건체육부 공중보건부

1971년 공중보건부 산하에 산업환경보건분과가 설치되었다. 산업환경보건분과의 역할과 기능은 업무상 질병, 상해, 보건문제를 예방하고, 각종 산업부문(시골지역 농경사회 포함)에 걸쳐 근로자 보건을 증진하는 것이다. 공중보건부의 중요한 목표중 하나는 사업장 내부 및 외부에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공중보건부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산업보건 증진
- 산업 폐기물 또는 사업장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독 측정
- 공기, 물, 토양오염으로 인한 건강문제 측정
- 산업 위험요소 예방

공중보건부는 공장및일반노동법감독과와 협력하여 필요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근로환경 평가
- 산업·환경보건 관련 훈련
- 대학, 관련 학과와의 협력
- 산업·환경 보건 관련 기본 데이터 및 정보 수집, 보고
- 산업보건 문제, 중독문제 검사, 조사, 보고
- 비정부단체, 국제기구(WHO, UNICEF), 기타 정부관련 부처와의 협력
- 근로자 건강평가
- 인적, 기술적 자원 강화

공중보건부는 공기, 물 오염, 독성물질, 유해폐기물, 화학물질 등과 같은 환경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문제 예방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근로자 보건을 포함한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예방대책 홍보, 건강한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사회 역량 육성, 환경관련 질병의 보건에 대한 영향, 위험평가, 역학조사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그 외 관련 부처

전기에너지부(미얀마 석유가스공사), 내무부(소방과), 건설부(건축과), 도시개발위원회(네피도, 양곤, 만델레이) 등의 부처가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



3

산업안전보건 감독

- 가. 감독체계
- 나. 인적자원
- 다. 감독방법 및 유형



3 산업안전보건 감독

가. 감독체계

○ 산업안전보건과 근로조건에 관한 법령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감독 체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노동감독체계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야한다.

- 1) 노동감독관이 가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임금, 안전, 보건, 복지, 아동 및 연소자 고용 등과 같이 근로조건 및 근로자 권리 보호를위한 노동관련 법령의 집행
- 2) 사용자 및 근로자에 대해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에 관한 기술적 정보 및 조언 제공
- 3)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제점 또는 잘못된 관행을 주무기관에 통지

○ 국제노동기준에 따르면 노동감독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역할을 법률에 명시해야 하며, 법령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고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는 미얀마 정부의 주무부처는 노동이민 인구부이며, 노동이민인구부의 책임에는 근로생활을 모니터링하고 노동감독을 시행할 책임도 포함된다. 노동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공장및일반노동법감독과이다.

○ 공장 및 일반노동법감독과가 집행을 담당하는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다.

- 공장법 1951
- 휴가공휴일법 1951
- 상점시설물법 2016
- 임금지급법 2016

○ 공장 및 일반노동법감독과 규칙은 다음과 같다.

- 위험직종(납) 규칙
- 위험직종(셀룰로이스 스프레이) 규칙
- 위험직종(크로뮴) 규칙
- 위험직종(기타) 규칙
- 위험직종(탄산수) 규칙
- 위험직종(샌드블래스팅) 규칙
- 위험직종(고무) 규칙



- 공장및일반노동법감독과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측정을 실시하고 샘플을 채취할 권한을 갖는다 (공장법 1951이 적용되는 상점, 공장, 시설물, 상점및시설물법 2016이 적용되는 상점 및시설물).
- 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 법령 준수를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 공장, 상점,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감독결과를 바탕으로 지시, 자문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경고, 고발 조치를 취한다
- 업무상 사고, 질병에 대한 조사
- 사용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히, 근로환경 감시에 관한 기술자문, 정보서비스 제공
- 사용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내 산업안전보건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
- 근로자 교육훈련 지원
- 사고 및 질병에 관한 통계 기록 유지
- 사업장 단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립 지원

- 공장 및 일반노동법감독과는 사전계획 하에, 또는 불시에 감독 목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다.
- 공장법 1951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감독관은 공장으로 사용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
- 감독관은 시설물 구내, 기계, 등록증과 공장관리 기록을 포함한 문서를 조사할 수 있다.

- 상점시설물법 2016 제5, 6조에 의하면 수석감독관과 감독관은 상점이나 상업시설물로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
- 감독관은 사업장 방문 시,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감독보고서를 작성한다. 감독보고서에는 안전보건 조건, 근로상황, 파악된 문제 목록, 권고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본청, 지역·주 사무실, 지구 사무실, 산업구역 사무실, 특별경제구역 사무실, 군 사무실을 포함해 총 83개의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다.



나. 인적자원

- 공장및일반노동법감독과 과장은 수석 공장 감독관을 겸직한다. 과장 휘하에는 공장감독분과, 일반노동법분과 등 두 개의 분과가 있다.
- 2017년 기준, 공장및일반노동법감독과에는 총 205명의 감독관이 근무중이며, 이 중 105명은 산업안전보건 감독관(공장감독관), 100명은 일반노동법 감독관이다.
- 대부분의 공장감독관은 공학관련 이력을 지니고 있다. 감독관은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체 교육, 국내외 산업안전보건 회의에 참석한다. 감독관은 상근직이며 겸직은 금지된다.



다. 감독방법 및 유형

- 사업체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의 감독이 시행된다.
 - 산업안전보건(공장) 감독
 - 일반노동법 관련 감독
- 공장및일반노동법감독과는 두 가지 유형 모두 정기(계획)감독 또는 부정기(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인간공학적 요인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장 위험요소에 초점을 맞춘다.
- 감독관은 별도의 허가없이 언제든지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다. 감독관(공장및일반노동법감독과 감독관)은 사용자나 근로자, 누구나 만나서 대화와 질의를 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감독관은 사업장 환경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감독관은 현장감독을 마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장및일반노동법감독과 수석감독관에게 제출해야한다.
- 산업안전보건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 감독관은 일반적으로 위반의 정도에 따라 ‘금지통지’를 하며, 해당 기업체가 적발된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권고방안을 담은 ‘조언통지’도 할 수 있다.

-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후 이뤄진 후속 감독결과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경우, 감독관은 해당 사안을 고발할 수 있다. 공장법 85조는 공장의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공장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00,000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둘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각하거나 임박한 위험이 발견된 경우, 감독관은 해당 사업장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 2016년 공장및일반노동법감독과 자료에 의하면 시설물 19,913개소, 공장 25,704개소가 공장법 1951, 상점및시설물법 2016의 적용을 받는다.

정기(계획 또는 후속방문)감독

정기감독은 사전에 대상과 목적을 정하고 법률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감독이다. 정기감독은 지역별 계획에 따라 실시된다. 감독관은 감독 계획에 따라 공장 및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감독하며,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개선 요구통지를 한다. 감독관은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후속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감독관은 매월 평균 25개소의 공장법 적용 시설물, 45개소의 상점시설물법 적용 시설물을 감독해야 한다.

불시(특별 방문) 감독

불시감독은 산업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했다는 내부 제보를 받았거나, 그 밖에 민원이 접수된 경우 실시한다.

2016-2017 회계연도 동안 총 131,237건(공장 57,430건, 상점및시설물 73,807건)이 시행되었다. 그중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7,350건(51.3%), 일반노동법감독은 63,887건(48.7%)이었다.

총 131,237건의 감독활동중 1,678개 사업체에 걸쳐 121,825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문 및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2016년을 기준으로 감독활동 중 총 183건의 산업 사고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총 29명의 근로자가 사망했으며, 154명이 부상을 당했다. 산업 부문별로는 목재도기 산업 48건, 식음료 산업 37건, 섬유산업 3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 [표] 산업안전보건 감독횟수, 미얀마(2016-2017)

산업안전보건 감독					
NO	월	공장		상점 및 시설물	
		공장 수	근로자 수	상점/시설물 수	근로자
1	2016, 4월	1,320	54,649	1,044	2,925
2	5월	1,365	64,730	1,312	3,410
3	6월	1,366	55,092	1,304	3,349
4	7월	1,346	54,116	1,323	3,477
5	8월	1,263	36,917	1,064	2,748
6	9월	1,334	75,391	1,281	3,650
7	10월	1,321	55,773	1,248	3,297
8	11월	1,349	42,062	1,235	2,352
9	12월	1,348	40,340	1,291	3,485
10	2017, 1월	1,332	63,080	1,147	3,086
11	2월	1,266	62,813	1,228	3,591
12	3월	1,286	42,158	1,246	3,600
13	4월	1,496	75,728	2,365	10,663
14	5월	1,393	63,624	2,156	9,340
15	6월	1,489	74,203	2,282	11,765
16	7월	1,594	49,142	2,540	11,311
17	8월	1,624	77,185	2,526	11,013
18	9월	1,586	82,146	2,443	11,125
19	10월	1,672	69,015	2,714	13,323
20	11월	1,604	50,626	2,630	12,016
21	12월	1,751	56,171	2,866	12,933
합계		30,105	1,244,961	37,245	143,451

☑ [표] 일반노동법 감독횟수, 미얀마(2016-2017)

노동법 감독					
NO	월	공장		상점 및 시설물	
		공장 수	근로자 수	상점/시설물 수	근로자
1	2016, 4월	1,116	49,306	1,247	6,573
2	5월	1,291	55,855	1,392	7,176
3	6월	1,283	55,652	1,398	8,342
4	7월	1,208	45,077	1,373	7,314
5	8월	1,201	34,094	1,302	6,586
6	9월	1,231	67,029	1,400	6,567
7	10월	1,175	57,507	1,309	8,119
8	11월	1,234	31,076	1,354	7,137
9	12월	1,235	41,513	1,366	8,244
10	2017, 1월	1,204	58,718	1,364	8,260
11	2월	1,195	52,606	1,388	8,315
12	3월	1,293	41,207	1,447	7,843
13	4월	1,280	61,257	2,085	9,683
14	5월	1,319	77,104	2,057	13,136
15	6월	1,282	67,192	1,966	10,339
16	7월	1,323	52,782	2,169	10,578
17	8월	1,333	67,685	2,060	9,901
18	9월	1,330	58,965	2,133	9,644
19	10월	1,503	52,781	2,434	11,852
20	11월	1,632	52,087	2,644	12,379
21	12월	1,657	52,289	2,674	14,090
합계		27,325	1,131,782	36,562	192,078



4

미얀마 노동관련법

가. 미얀마 노동법 개요

나. 그 외 관련 법률



4 미얀마 노동관련법

가. 미얀마 노동법 개요

- 미얀마 헌법(2008)에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관련된 조항은 24조이다: ‘정부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2008년 새로운 미얀마 연방 헌법이 채택되고 경제가 개방된 후, 미얀마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했다. 이에, 미얀마 정부는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빈곤을 퇴치하고,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성장을 이끌기 위해 야심찬 의제를 발표했다.

☑ [표] 2011년 이래 새로 제정·개정·현재 개정중 또는 입법중인 노동관련 법률

새로 제정된 법률	개정된 법률	개정 중인 법률	입법 중인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직법 (법률 제 7호, 연방의회, 2011) • 노동분쟁해결법, 2014 • 사회보장법, 2012 • 최저임금법, 2013 • 고용및기술개발법, 2013 • 상점및시설물법, 2016 • 임금지급법,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법 1951 개정 (연방의회 제 12/2016호) • 근로자보상법 1923 (2005 개정) • 연가및공휴일법 1951 (2014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근로자법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근로자법 • 산업안전보건법

- 미얀마는 여러 건의 중요한 법률 개정들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이래로 미얀마 정부는 ILO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들에게 노동법 개혁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수많은 법률 및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해 왔다.
- 미얀마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제를 총괄하는 단일한 기본법이 아직 없다.
현재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범은 특정산업(예: 공장, 부두, 상점, 상업시설물, 광산 등) 또는 특정 위험 유형(예: 화재, 살충제, 화학물질 등)을 관장하는 법률에 흩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 안전보건 주무부서도 여러 부처 및 기관들로 나뉘어져 있다.



- 2017년 2월, 노동이민인구부 공장및일반노동법감독과에서 산업안전보건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2019년 3월 15일 연방의회 법률 제2019-8호로 제정되어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부처 및 기관들 간의 업무를 조율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본법의 역할을 하게 된다.

- 법안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모든 산업 분야의 안전 및 보건 관련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제공
- 관계 당사자들의 의무 및 책임 규정, 업무상 사고 및 질병 예방 및 감소
- 산업안전보건 기준 제정
-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행정 및 활동에 참여하는 정부부처 및 기관들 간의 업무 조율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관련 핵심 업무조정 및 조율을 담당할 삼자주의 협의체인 국가 산업안전보건협의회 설립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이 법안에 따르면 기업 단위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협의는 산업안전보건양자위원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 위원회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 환경조사 및 보고
- 사용자에게 예방조치에 관해 조언
- 의무적 훈련 실시 및 시설물 제공 여부 확인
- 산업보건 및 근로조건 개선
-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시행 감독
- 위원회의 관리 역량을 벗어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장및일반노동감독과에 보고

- 삼자주의 협력은 산업안전보건 실무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중 하나다.

미얀마에도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여러 삼자협의 기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삼자 대화포럼(NTDF, National Tripartite Dialogue Forum)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5년에 설립된 삼자대화포럼은 국가차원의 노동관련 주제를 다루는 독립적인 협의기구다. 기업 단위에서는 노동분쟁해결법(2012년)에 명시된 양자적 접근법이 적용된다. 3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사업장조정위원회(WCC, Workplace Coordination Committee)를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 사업장조정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을 포함한 고용관계 전반에 걸쳐 노사간의 협력, 협정, 조율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규칙, 국가 산업안전보건 협의회, 시행 규칙, 정책도 함께 만들어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적 요구조건들도 전부 개정될 것이다.
- 동 법안은 그 밖에도 ILO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제187호, 2006)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설립, 사업체 단위 안전보건 담당자 임명,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근로자 대표 구성, 양자 협의, 사업체 단위 산업안전보건 협력 기제 구축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나. 그 외 관련 법 등

- 공중보건대학, 국방의무학교, 간호대학, 지역사회보건대학과 같은 교과 과정에 산업안전보건 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 사회보장법(2012)에는 현재까지 6가지 보험이 규정되어 있다(의료/사회복지보험, 가족보험, 장애수당, 연금수당, 유가족수당, 실업수당 및 보험). 2015년을 기준으로 사회적 보호제도(연금 또는 퇴직금)에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11.8%에 불과하다. 사회보장위원회가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수는 2003년 500,700명에서 2015년 871,320명으로 매년 평균 4%씩 증가했다. 2015-2016년을 기준으로 388,981명의 남성근로자와 482,339명의 여성근로자가 사회보장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근로자의 4%에 해당된다.
- 1개의 사용자 조직(UMFCCI, 미얀마상공회의소연합)과 3개의 근로자 조직(AFFM, 미얀마 농업농부연맹/ CTUM, 미얀마노조연합/ MICS, 미얀마산업수공업서비스노조연맹)이 전국 단위로 활동하고 있다. 미얀마상공회의소연합은 21,732개의 기업과 1,793개의 사업체, 974개의 외국 기업, 249개의 협동조합, 3,396명의 개인을 대표하고 있다. 이들 사용자 조직과 근로자 조직은 각각 자체적인 산업안전보건 부서를 두고 있으며, 제한된 인력과 지원 하에서도 교육 훈련, 인식 제고 등의 활동을 비롯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5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체계

-
- 가. 법령체
 - 나. 공장법 1951
 - 다. 적용범위 및 예외
 - 라. 청소년 고용
 - 마. 상점및시설물법 2016
 - 바. 미얀마가 비준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ILO 협약
 - 사.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관련 법률
 - 아. 산업안전보건관련 상시명령



5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체계



가. 법령 체계

- 미얀마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체계는 여러 개의 개별적인 법률들로 구성되어 있다.
- 그 중에서 중심이 되는 법률은 1951 공장법(2016년 개정)이며 그 밖의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자보상법, 1923(2005년 개정)	■ 유전(노동 및 복지)법, 1951
■ 공중보건법, 1972	■ 원자력에너지법, 1988
■ 민간공업기업법, 1990	■ 미얀마해양어업법, 1990
■ 사회보장법, 2012	■ 화학물질 및 관련물질유해성예방법, 2013
■ 전기법, 2014	■ 미얀마소방청법, 2015
■ 미얀마광산법, 2015	■ 보일러법, 2015
■ 상점 및 시설물법, 2016	■ 살충제법, 2016
■ 양군시개발위원회, 그 밖의 도시 및 군단위 지자체의 공중보건 및 안전관련 규칙 및 명령	

- 이와 같은 법령들은 공식 부문 고용관계에 주로 적용된다. 따라서 현행법 체계에서는 비공식 부문은 법률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 공장법(1951)을 비롯하여 공장, 상점, 상업시설물 근로자들의 권리보장과 관련된 법령들은 공장및일반노동법감독과의 소관이다.
- 공장및일반노동법감독과 외에도 여러 정부기관 및 부서들이 직간접적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산업부 산업감독검사국(DISI):
 - 민간 기업의 등록, 사업체에 대한 감독, 사업장 보일러 및 전기설비 안전검사, 환경보호 업무
- 천연자원환경보존부 광산과:
 - 광산근로자의 근로시간, 휴식시간, 안전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
- 보건체육부 공중보건과 산하 산업환경보건분과(OEHD)
- 농축산관개부 농업과
- 내무부 소방과
- 건설부 건축과
- 도시개발위원회

나. 공장법, 1951

- 미얀마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역사가 깊다.
 - 공업 부문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식시간, 안전보건을 규정하는 기본 법률의 역할을 하는 공장법은 미얀마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1913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 그후 공장법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공장법 1934로 집대성되었다. 1935년에는 공장법 1934를 보충하기 위한 공장 규칙이 발표되었다.
 - 미얀마는 1948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독립 후 처음으로 입법된 법률중 하나가 공장법 1934를 개정하는 공장법 개정을 위한 법률 1948이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51년, 미얀마어로 된 공장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공장법 1934를 완전히 대체했다.
 - 그러나 1935 공장규칙은 1951 공장법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존속되었다. 공장법은 노동 감독, 근로자의 보건, 안전, 복지, 성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청년고용,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미얀마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노동법 개혁과정에서 2016년에 개정되었다.
- 공장법은 근로자를 위한 건강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할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 따라 사용자는 물리적 위험요소(예: 기계사용), 위험물질, 환경적 요인 등과 같은 사업장 위험요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도 진다. 동법은 여성 및 아동이 종사할 수 없는 특정 유형의 직종도 규정하고 있다.



- 공장법(1951)은 안전보건담당자, 감독관을 임명해야하는 공장 사용자의 의무, 노동이민인구 부가 인정하는 산업안전보건 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할 근로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 적용범위 및 예외

- 1951 공장법에서 공장이란 동력의 도움을 받아 작업하는 5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 또는 동력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작업을 하는 1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을 의미한다. 동법은 1~2인이 근무하는 인쇄, 식용기름 착유, 자동차정비 및 도색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필요한 경우, 미얀마 광산법에 따라 광산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이 아닌 한, 고시를 통해 공장법의 적용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
- 동법 57조는 ‘독, 선창, 부두, 그에 부속되거나 함께 사용되는, 기계적 동력을 사용하거나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창고 또는 저장시설은 공장으로 간주되며, 해당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동법에 따른 사용자로, 그에 고용된 자는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장법은 감독관이 공장의 구내, 기계, 서류를 살펴보고, 공장 내에서 샘플을 채취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 공장및일반노동법감독과는 사업장 감독 및 자문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집행하는 주무 부서이다.
- 공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공장및일반노동법감독과 감독관에게 부여된 권한은 다음과 같다.

- 사람의 안전에 대한 임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장의 전체 또는 일부의 영업을 금지시킬 권한
- 사업체에 사람의 생명 또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 수립, 안전 시험 실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권한
- 유해가스가 없고 근로자가 진입해도 안전하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챔버, 탱크와 같은 밀폐공간 내 작업을 금지시킬 권한
- 특정 소재 또는 공정의 사용을 제한할 권한



- 여성 및 청소년 근로자의 위험한 산업 부문 또는 직종 고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권한
- 기계 또는 폭발성 또는 인화성 소재가 담긴 용기에 대한 수리 및 개조 인증
- 각 구역 당 최대 근무가능 인원수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 안전, 복지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게시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권한
- 사고 또는 질병의 원인을 조사하고, 공장 내에서 필요한 샘플을 채취하고, 그 결과를 기밀로 유지할 권한

라. 청소년 고용

○ 공장법은 아동, 청소년의 고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 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아동’이란 의사에 의해 근로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14세 생일이 지났으며, 16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한다
- ‘청소년’이란 16세 생일이 지났으며, 18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한다
- ‘연소자’라 함은 아동 또는 청소년인 자를 의미한다

○ 근로 또는 고용이 가능한 최저 연령:

- 공장법은 14세 미만인 자의 공장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75조)

○ 동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14세 미만인 자의 고용을 금지한다

- 유해물질 취급과 같은 최악의 근로형태
- 연소자의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환경
- 연소자의 교육을 방해하거나 착취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동법은 ‘연소자’가 위험한 기계를 다룰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25조), 솜 새면기(cotton opener)를 사용하는 공장은 ‘아동’을 고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29조).

○ 아동 및 청소년의 근로시간은 하루 4시간으로 제한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만 일할 수 있다. 아동은 하루에 하나의 공장에서만 일할 수 있다.



마. 상점및시설물법, 2016

- 상점 및 시설물법 1951을 대체하는 신법은 근로시간, 임금지급, 사업장 안전보건, 아동근로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다.
- 상점 및 시설물법 2016은 2조에서 정의하는 상점, 상업 시설에 적용되며, 34조에 따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거리 가판대
- 부정기적으로 열리는 대중 유흥시설 또는 공연장에 설치된 상점
- 임시 행사를 위해 설치된 시설물 내 상점

- 새로 개정된 상점 및 시설물법 2016은 다음과 같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 청소, 환기, 건강을 위한 조치
- 신선한 공기 및 충분한 조명을 위한 조치
- 정해진 소음 기준치 이하로 소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 과열예방, 화재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
- 관련 규정에 따라 충분한 수의 구급상자 및 구급약품 구비를 위한 조치

- 동법은 상점 및 상업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연소자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규정도 두고 있다. 최저 고용 가능 연령은 14세이며(13조), 연소자는 자격을 갖춘 의사에 의해 근로 적합성을 확인 받아야 한다. 연소자의 근로시간에 관해 신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6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는 상점 또는 상업시설물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다(13b조)
- 14세 생일이 지났고, 16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는 하루에 두 곳 이상의 상점 또는 상업 시설물에서 일할 수 없다(14c조)
- 18세 미만인 자는 유해한 작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할 수 없다(14d조)

1. 국가원형

2.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조직체계

3. 산업안전보건 감독

4. 미인마 노동관련법

5.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체계

6. 산업제해

부록



바. 미얀마가 비준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ILO 협약

- 미얀마는 1948년에 ILO에 가입한 후 23개의 ILO 협약을 비준했으며, 그중 21개가 현재도 효력을 갖고 있다. 미얀마는 ILO의 8개 핵심 국제노동협약 중 3개를 비준했다. 가장 최근에 비준한 협약은 2013년 12월에 비준한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에 관한 협약 1999(제182호)이다.
- 미얀마가 비준한 모든 협약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ILO 협약	
23개 비준(2개 철회)	
C029	- 강제노동 협약, 1930(제 29호)
C087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1948(제 87호)
C182	-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 협약, 1999(제 182호)
C001	- 근무 시간(공업) 협약, 1919(제 1호)
C002	- 실업 협약, 1919(제 2호)
C004	- 야간 근무(여성) 협약, 1919(제 4호) (철회)
C006	- 청소년 야간 근무(공업) 협약, 1919(제 6호)
C011	- 결사의 자유(농업) 협약, 1921(제 11호)
C014	- 주휴(공업) 협약, 1921(제 14호)
C015	- 최저 연령(석탄부 및 화부) 협약, 1921(제 15호)
C016	- 연소자 의료 검진(해상) 협약, 1921(제 16호)
C017	- 근로자 배상(사고) 협약, 1925(제 17호)
C018	- 근로자 배상(업무상 질병) 협약, 1925(제 18호)
C019	- 균등 처우(재해 배상) 협약, 1925(제 19호)
C021	- 이민자 협약, 1926(제 21호)
C022	- 선원 고용계약 협약, 1926(제 22호)
C026	- 최저임금 결정제도 협약, 1928(제 26호)
C027	- 무게 표시(선박 운송 화물) 협약, 1929(제 27호)
C041	- 야간 근무(여성) 협약(개정), 1934(제 41호)(철회)
C042	- 근로자 배상(업무상 질병) 협약(개정), 1934(제 42호)
C052	- 유급휴가 협약, 1936(제 52호)
C063	- 임금 및 근로시간 통계에 관한 협약, 1938(제 63호)
MLC, 2006	- 해사노동 협약, 2006(MLC 2006)



사.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 유전(노동 및 복지)법 1951

- » 유전(노동 및 복지)법 1951은 석유산업의 산업안전보건을 규정한 기본 법률이다. 이 법은 ‘유전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유전근로자란 ‘직·간접적으로 석유 또는 가스 채취 작업에 고용된 자’를 의미한다.
- » 동법은 의무적 안전조치, 업무상 사고 및 질병 신고 의무, 아동고용 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의 측면에서 공장법과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은 이동식 음용수 제공 시설, 위생시설, 충분한 세척실을 포함한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또한 기계안전, 밀폐된 공간의 화재 및 유해연기 예방, 필요한 경우 보호안경 지급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 공중보건법 1972

- » 공중보건법은 식품, 의약품, 환경 위생시설 품질관리를 통한 근로자 건강 보호, 전염병 예방, 병·의원 규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3조는 공중보건을 증진시키고, 위험요소로부터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자문, 조사, 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원자력 에너지법 1988

- » 원자력에너지법은 원자력 에너지 개발, 원자력 에너지 안전보장, 사람 및 환경을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대책 시행, 외국 연구기관과의 원자력 에너지 관련 지식 및 기술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14개장, 39조로 구성되어 있다.
- » 관할 부처는 장관, 유관기관의 장, 과학자 등으로 구성된 원자력에너지협의회를 설립해야 한다. 동법 IV ~ VI장은 관할 부처 및 부서의 의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 또는 방사능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은 관할 부서에 등록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VI장). 개인이 원자력 또는 방사능 물질을 사용, 생산, 보관, 유통,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VIII장). 원자력 또는 방사능 물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고자 할 경우, 관할 정부 부서 또는 기관의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IX장). 나머지 장들은 행정 절차, 규제, 처벌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 » 동법은 사업장 안전, 보건 수준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 동법에서 화학물질이란 ‘사람 또는 동물의 건강 또는 생명에 위험을 가할 수 있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연적, 인공적 화학 원소, 화합물, 혼합물’을 의미한다. 동법은 화학물질 및 관련 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검토 및 관리 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악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팀구성과 같은 전략도 명시되어 있다.
- » 8조는 화학물질 및 관련 물질 취급 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액체, 기름, 고체 폐기물,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화학물질 및 관련 물질의 폐기, 배출, 처리 관련 규칙 준수 여부 감독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화학물질 및 관련 물질의 위험수준 및 유형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16조는 허가취득자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감독 및 감사 팀을 통해 해당물질이 사람, 동물, 환경에 유해한 지 여부 확인
- 위험 화학물질 및 관련 물질 저장 시, 지자체 관련 부서에 허가서 사본 제출
- 가연성 또는 폭발성 물질 사용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을 경우, 관할 소방서에 사전 허가 신청
- 화학물질 및 관련 물질을 허가된 구역에서 다른 구역(지역)으로 운송할 경우, 중앙 감독 기관의 승인 신청
- 화학물질 및 관련 물질 사용이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관련 법률 준수

- » 17조는 허가 취득자는 화학물질 및 관련 물질의 사용으로 인해 사람, 동물, 환경에 손상을 입힐 경우 그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 26조는 국내외에서 얻은 정보에 따라 허가된 화학물질 및 관련 물질이 사람, 동물, 환경에 유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중앙 감독기구는 허가 취득자가 해당 화학물질 및 관련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전기법 2014

» 전기법은 1984년에 전기규칙 1937을 대체하여 제정되었다. 주법 및 명령복구협의회법 제3/90호는 1990 법률을 정한 법이다. 동법은 2014년 10월 27일에 다시 개정되었다.

(연방의회 제44/2014호)

» 전기법의 1차적인 목적은 전기 발전기, 변압기, 배전기, 전기 일반 관련 안전을 감독하는 것이다.

○ 미얀마 소방청법 2015

» 미얀마 소방청법은 예비 소방대의 설립, 화재 위험에 노출된 공장, 공방, 버스터미널, 공항, 항만, 호텔, 모텔, 여관, 콘도, 시장, 백화점, 기업체에서 소방대의 역할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13조).

» 동법 17조는 3층 이상 건물 신축, 콘도, 상점, 주상복합 건물, 호텔, 모텔, 여관, 공장, 공방, 창고, 저장탱크 허가, 차량, 기차, 항공기, 헬리콥터, 선박, 기선, 무동력선을 이용한 화물 운반에 대한 허가 시 관할 부처 또는 기관은 소방과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 IX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대의 의무 및 권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소화 책임자는 소화와 관련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예, 전기선 절단, 석유 또는 가스관 차단, 가용한 모든 물 확보)

25조 : [...]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공장, 공방, 버스터미널, 공항, 항만, 모텔, 여관, 콘도, 상점, 백화점, 기업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소방과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예방 소방대 결성
- 화재안전 장비 제공

○ 보일러법 2015

» 보일러법 2015는 2015년 7월 14일, 보일러법 1984를 대체하여 제정되었다. 동법 3조에 따르면 동법의 목적은 보일러의 폭발 및 손상을 방지하고, 생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며, 가동 연한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보일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 살충제법 2016

» 살충제법 2016은 2016년 1월 20일, 살충제법 1990을 대체하여 제정되었다.

» 살충제법은 ① 농업부문 살충제 도포작업 ② 소비자 ③ 환경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살충제법은 살충제가 생산, 포장, 보관되는 제조공장에도 적용된다. 살충제법의 보호대상은

① 살충제를 생산, 포장, 보관, 운송, 취급하는 근로자 ② 농업부문에서 살충제에 노출되는 자이다.



살충제 규칙

» 규제의 측면에서 보면 미얀마는 살충제 제조, 등록, 생산, 포장, 저장, 유통, 사용에 관한 기초적인 관리 체계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된 관계당국의 지침은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은 기술 표준을 규정하고 있는 살충제 제조, 포장, 저장에 관한 지침(살충제 등록위원회 고시 1/2012):

- 산업위험 파악
- 사용금지, 제한 등과 같은 위험관리
- 근로환경 감독 및 모니터링
- 유해작업 신고, 관련 허가 및 관리 요구조건

다음과 같은 기술 표준을 규정하고 있는 살충제 라벨링 지침(살충제 등록위원회 고시 2/2012):

- 위험 및 노출 수준 평가
- 노출 한계치 및 관련 기준, 주기적인 개정 및 최신화
- 유해 화학물질 분류 및 라벨링, 관련 정보 제출

생물학적 영향 시험 절차 지침(살충제 등록 위원회 고시 1/2013)

- 독성 화학물질 관리 관련 법률**
- ① 미얀마는 사람, 작물, 그 밖의 생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살충제의 선택, 저장, 운송,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살충제법 2016을 제정했다.
 - ② 공장법 1951은 화학물질 특히 유해하거나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장에 적용된다.
 - ③ 화학물질및관련물질위험예방법 2013은 승인된 화학물질 및 관련 물질을 사용하는 업체에 적용된다.
 - ④ 공중보건법 1972도 소비재를 비롯한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⑤ 식품법 1997은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식품 안전 및 식품 품질 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보건부 식품의약청)
 - ⑥ 미얀마는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13가지 잔류유기오염물을 발생시키는 41가지 살충제의 사용을 금지했다.

아.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시명령

○ 산업안전계획(상시명령 제1/95호)

» 미얀마 연방 정부는 산업부를 통해 산업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상시명령 1/95호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상시명령은 산업부 소관의 국영 공장, 제분소, 기업이 근로자들을 업무상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보건 수준을 증진시킴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산업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 국가원형

2.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조직체계

3. 산업안전보건 감독

4. 미얀마 노동관련법

5.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체계

6. 산업제해

부록



○ 산업보건계획(상시명령 제2/95호)

» 미얀마 연방 정부가 산업부를 통해 발표한 상시명령 제2/95호에 따라 1995년 3월 29일 산업보건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상시명령은 산업부 소관의 국영공장, 제분소, 기업이 근로자들을 업무상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보건수준을 증진시킴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산업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상시명령은 ① 산업보건의 개념 정의 ② 산업보건계획적용 대상인 업무상 질병 및 위험 목록 ③ 계획의 세부적인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산업보건계획에서 다루는 사업장 산업보건 위험요서는 다음과 같다: 조명, 소음, 독성, 분진, 연기, 미스트, 가스

○ 물·공기 오염관리 계획(상시명령 제3/95호)

» 미얀마 연방 정부는 산업부를 통해 1995년 8월 21일에 상시명령 제3/95호: 물·공기 오염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이 상시명령은 산업부 소관의 국영공장, 제분소, 기업이 해당시설에서 발생한 오염원으로 인해 수자원, 토지, 공기를 포함한 자연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물·오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이 상시명령은 물·공기 오염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담고 있으며, 허용되는 폐기물 배출기준, 폐기물 관리, 감축, 폐기를 위한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위한 지침도 담고 있다.

○ 식품의약품 관리계획(상시명령 제4/95호)

» 미얀마 연방정부는 산업부를 통해 1995년 8월 21일에 상시명령 제4/95호: 식품의약품 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이 상시명령은 산업부 소관의 국영공장, 제분소, 기업이 공중보건법 1972, 의약품법 및 관련 명령, 지시에 따라 식품 및 의약품을 생산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통일된 대책을 채택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미얀마 건축 규칙(2016)

» 미얀마 건축 규칙은 건설부에서 제정한다. 건축 규칙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는 동 규칙 7장의 안전보건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현행 법률체계에서 미얀마 건축 규칙이 강제적인 효력을 가지는지는 확실치 않다. 현재 건설부는 건설안전법 법안을 준비중이다. 이 법이 의회를 통과하면 미얀마 건축 규칙도 강제적인 효력을 갖게 될 것이다.



4

산업재해

- 가. 산업재해
- 나. 업무상 사고 및 질병기록 신고체계
- 다. 재해통계
- 라. 업무상 상해 및 질병배상



6 산업재해

가. 산업재해

- 미얀마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사고’를 업무로 인하여 또는 업무 도중에 발생하여 죽음이나 부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고란, 계획이나 예상과 다르게 발생하여 사람의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저해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재물에 손상을 끼치는 일을 의미한다. 사고시 피해자의 신체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다른 물체, 사람, 물질과 접촉하거나 그에 노출되며, 사람의 움직임이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 공장 및 일반노동법감독과가 집행하는 법률들은 업무상 사고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 공장 및 일반노동법감독과는 관할 대상 업무상 사고의 유형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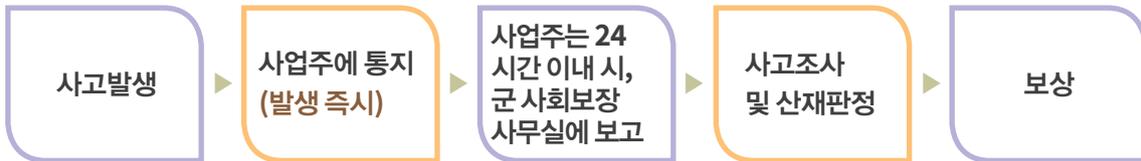
- | | |
|--------|-----------|
| ■ 성별 | ■ 기업유형 |
| ■ 사고원인 | ■ 부상 신체부위 |

- 일반적으로 기업유형은 9가지, 사고 원인은 11가지, 부상 신체부위는 8가지로 분류된다. 공장 및 일반노동법감독과는 업무상 질병이나 준사고는 별도로 분류하지 않으며, 다양한 근로자 집단의 산업안전보건 위험요소와 위험성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령별, 세부부문별 분류도 하고 있지 않다.
- 산업사고의 피해자인 근로자는 사고로 인해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되며, 단기간 또는 장기간에 걸쳐서 근로소득을 상실하게 된다. 사용자 역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보상비, 사고처리비, 유급병가 지급금 등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며, 사고가 잦고 정도가 심할 경우 근로인사의 손해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나. 업무상사고 및 질병기록 신고체계

- 업무상 사고 및 질병기록, 신고제도는 사회보장제도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15가지 유형의 시설물(사회보장법 2012)과 공장법 1951 적용 대상 및 시설의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된다.
- 사회보장위원회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노동생산성이 상실률을 기준으로 업무상 사고를 분류하고 있지만, 업무상 질병이나 준사고에 대한 분류기준은 아직 마련되어있지 않다.
- 노동법 1951과 사회보장법 2012는 신고제도를 설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업무상 사고

» 업무상사고 또는 부상신고에 관한 내용은 공장법 1951 53조에 명시되어 있다. 동법이 적용되는 공장이나 시설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관할 구역내에서 업무상 사고 또는 부상이 발생할 경우 양식을 사용하여 공장 및 반노동법감독과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이뤄지면 담당감독관이 사고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장 및 일반노동법감독과에 보고한다. 공장및일반노동감독과는 보고서를 기록, 분류, 확인한다. 기록이 끝나면 공장 및 일반노동감독과는 감독관에게 필요한 지시나 지침을 내린다. 업무상 상해기록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산업부문, 자주 나타나는 부상 원인을 분석하는데 활용된다. 상해보고서는 감독관들에게 제공되어 사용자 및 근로자와의 논의에 사용된다. 공장 및 반노동법감독과는 조사보고서와 지시내용을 정리하여 배포한다.

업무상 질병

» 공장 및 일반노동법감독과는 아직 업무상 질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공장법 1951 54조는 근로자 보상법 1923 별표 III에 명시된 업무상 질병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사회보장규칙(규칙 175)에 따라, 사용자는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 발생 시, 군 사회보장사무실에 그 사실을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 군 사회보장 사무실 수석 감독관들이 업무상 사고 및 질병기록 및 통지 업무를 담당한다. 수석 감독관들은 관할 지역 내 사고를 조사하고 기록할 권한을 갖는다.

다. 재해통계

- 공장 및 일반노동법감독과와 사회보장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 통계 수집, 분류, 분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통계들에는 휴직 여부와 무관하게 장애, 증상, 질병에 관한 통계가 포함되지만, 치료가 필요없거나 응급처치만을 필요로하는 경상, 의식불명, 근로제한 또는 이직을 필요로하는 사고에 대한 통계는 없다.
- 공장 및 일반노동법감독과는 업무상 사고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노동이민인구부 홈페이지와 ASEAN-OSHNET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사회보장위원회 통계는 월단위, 연단위로 발표된다. 이 통계자료들은 부서 보고서에 첨부된 형태로 발표되며, ILO 지침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정확성이 부족하고 범위가 제한적이며, 빈도, 발생률, 강도를 계산에 사용될 수 없다.
- 2016년 공장 및 일반노동법감독과 통계에 의하면 사망사고는 근로자 100,000명당 4.2건 발생했으며, 부상사고는 근로자 100,000명당 25.6건 발생했다. 공장 및 일반노동법감독과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집계하지 않고 있다.

☑ [표2] 2013~2017 5년간 업무상 사고사망자 및 부상자 수

연도	경상		증상		사망		합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3	11	1	18	4	15	1	44	6
2014	5	4	29	8	14	2	48	14
2015	34	1	55	13	21	1	110	15
2016	53	27	74	23	26	2	153	52
2017	36	9	90	19	21	-	147	28

- 출처: 공장 및 일반노동법감독과



☑ [표3] 2013~2017 5년간 업종별 업무상 사고사망자 및 부상자 수

연도	산업부문										합계																			
	섬유·의류			공업			광업			식음료			화학			제지·인쇄			목재·도기			표시·포장			일반					
	경상	충청	사망	경상	충청	사망	경상	충청	사망	경상	충청	사망	경상	충청	사망	경상	충청	사망	경상	충청	사망	경상	충청	사망	경상	충청	사망			
2013	3	9	1	1	1	5	-	7	2	4	7	3	-	1	1	-	1	1	1	8	3	-	-	-	4	12	4	13	46	20
2014	1	3	-	1	9	1	-	10	2	2	2	6	-	1	-	1	-	2	1	6	2	-	-	-	3	6	3	9	37	16
2015	2	4	2	12	5	6	1	7	1	3	12	3	1	2	-	1	2	-	7	20	9	1	-	-	1	6	1	29	58	22
2016	14	13	2	8	6	1	2	6	4	12	15	5	2	4	2	-	3	1	17	23	7	-	-	-	5	18	4	60	88	26
2017	8	12	1	8	5	-	-	5	5	7	18	5	1	-	1	-	4	1	14	30	2	-	-	-	4	27	6	42	101	21
합계	28	41	6	30	26	13	3	35	14	28	54	22	4	8	4	2	10	5	40	87	23	1	-	-	17	69	18	153	330	105

- 출처: 공장 및 일반노동법감독과

☑ [표4] 2014~2018 5년간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

연/월	발생 건수	등록 근로자	등록 근로자 중 사망자 비율(%)	등록 근로자 100,000명 당 사망자 수
2014-15	78	778,837	0.01%	10.01
2015-16	61	871,320	0.01%	7.00
2016-17	66	1,001,209	0.01%	6.59
2017-18	67	1,149,232	0.01%	5.83
2018-19	11	1,163,516	0.0009%	0.95

- 출처: 사회보장위원회

☑ [표5] 2012-2013 회계연도에서 2017-2018 회계연도까지 기록된 업무상 부상

회계연도	일시장애 수급(건수)	영구장애 수급(건수)	유가족 수급(건수)	전체 수급 (Case)	노동 인구	일시장애 발생률	영구장애 발생률	유가족 비율	합계
2012-2013	1,258	6,807	6,185	14,250	624,018	0.20	1.09	0.99	2.28
2013-2014	1,144	6,230	5,973	13,347	703,134	0.16	0.89	0.85	1.90
2014-2015	1,348	5,196	4,516	11,060	778,837	0.17	0.67	0.58	1.42
2015-2016	1,568	4,230	3,485	9,583	871,320	0.18	0.49	0.43	1.10
2016-2017	2,493	4,058	3,670	10,221	1,001,209	0.25	0.41	0.37	1.02
2017-2018	2,471	4,250	3,602	10,323	1,149,232	0.22	0.37	0.31	0.90
2018-2019	398	694	576	1,668	1,163,516	0.03	0.06	0.05	0.14
합계	10,642	31,414	28,143	70,197	6,291,266	0.91	2.70	2.42	6.03

1. 국가원형

2.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조직체계

3. 산업안전보건 감독

4. 미인허 노동관련법

5.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체계

6. 산업제해

부록



☑ [표6] 2012-2013 회계연도에서 2018-2019 회계연도까지 기록된 업무상 부상(근로자 100,000명당)

회계연도	일시장애 수급(건수)	영구장애 수급(건수)	유가족 수급(건수)	전체 수급 (Case)	노동 인구	일시장애 발생률	영구장애 발생률	유가족 비율	합계
2012-2013	1,258	6,807	6,185	14,250	624,018	201.60	1,090.83	991.16	2,283.59
2013-2014	1,144	6,230	5,973	13,347	703,134	162.70	886.03	849.48	1,898.22
2014-2015	1,348	5,196	4,516	11,060	778,837	173.08	567.15	579.84	1,420.07
2015-2016	1,568	4,230	3,485	9,583	871,320	179.96	485.47	434.40	1,099.83
2016-2017	2,493	4,058	3,670	10,221	1,001,209	2,490.59	405.31	366.56	3,262.46
2017-2018	2,471	4,250	3,602	10,323	1,149,232	215.01	369.8	313.4267	898.2521
2018-2019	398	694	576	1,668	1,163,516	34.21	59.6	49.50512	143.3586
합계	10,642	31,414	28,143	70,197	6,291,266	914.64	2,699.	2,418.789	6,033.351

- 출처: 사회보장위원회

☑ [표7] 2014~2019 5년간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

기간	사업장 외부			사업장 내부			합계
	통근 중 (건수)	근무 중 (건수)	합계	감전 (건수)	기계/장비 (건수)	합계	
2014-2015	28	12	40	11	25	36	76
2015-2016	22	12	34	5	12	17	51
2016-2017	23	10	33	9	16	25	58
2017-2018	27	9	36	5	16	21	57
2018-2019	3	2	5	1	5	6	11
합계	103	45	148	31	74	105	253

- 출처: 사회보장위원회



라. 업무상 상해 및 질병 배상

- 현재 미얀마는 서로 겹치지 않는 두 가지의 보상체계를 갖고 있다.

업무상 상해보험

» 현재 개정을 논의중인 사회보장법 2012는 질병, 임신, 실업, 업무상 상해보험, 피부양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수당 지급, 주택 용자 등과 같은 사회보장 제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동법 13조는 다섯 가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의료·사회 복지 보험
- 장애수당
- 유가족 수당 및 실업수당
- 가족보험
- 연금수당

» 업무상 상해보험은 보험기금과 기금 확보 방식이 다른 제도들과 다르기 때문에 동법 VI장(45조)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다.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은 사용자의 분담금을 통해서만 조성되며, 근로자는 기금 조성에 기여하지 않는다. 상기 6가지 제도 중 3가지 제도만 현재 시행중이며, 업무상 상해보험도 그 중 하나다.

수당 지급 기준	
(a) 일시적 장애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4개월간 수령한 임금의 70% • 주 단위 또는 월 단위 지급 • 최대 12개월 간 지급
(b) 영구 장애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 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수당 금액 결정, 지난 4개월간 수령한 평균 임금의 70% • 근로 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장기적으로 수당 지급 • 월 단위 지급 또는 일시불 지급
(c) 유가족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의 근속 기간에 따라(60개월 미만에서 240개월 초과까지) 지난 4개월간 수령한 평균 월급의 30~80배 • 월 단위 지급 또는 일시불 지급

» 사회보장법은 5인 이상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사회보장위원회에 등록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공무원, 국제기구, 계절성 농업·어업, 비영리단체, 가사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5인 이상 사업체의 모든 상근·비상근 유급 근로자, 유급·무급 수습 근로자가 등록 대상이며, 사용자의 피부양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체, 학생, 프리랜서, 농부도 원할 경우 등록할 수 있다.

»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의료소위원회의 업무상 상해·질병 판정을 받아야 한다. 사회보장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자 배상위원회에 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장규칙 2014

사회보장규칙은 정부 고시 제 41/2014호로 제정되었다(2014/4/2/).

» 동 규칙은 사회보장제도의 각 절차별로 필요한 양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양식이 규칙에 첨부되어 있다. 동규칙 II 장은 집행위원회와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 역할, 행정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급부		사용자 부담금 (근로자 임금 대비 비율)	근로자 부담금 (근로자 임금 대비 비율)
업무상 상해 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상 질병(치료) • 일시적 장애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구적 장애 수당 • 유가족 수당 	1% 0%
의료사회 복지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 • 질병 수당 • 질병 현금 수당 • 출산 현금 수당 • 출산 현금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경비 • 유산 현금 위로금 • 장래 지원금 • 가족 수당 • 은퇴 후 의료 급여 	2% 2%
합계		3%	3%

근로자 배상

» 근로자배상법 1923 및 동법을 개정하는 신법(국가평화발전협의회법 제4/2005호). 근로자 배상법 1923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주요 법률중 하나다. 동 법은 사용자가 납부한 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통해 업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 피해 근로자와 그 가족을 금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현금배상 제도이다. 동법 첨부 III 에는 업무상 질병목록 (a), (b)가 명시되어 있다. 동 법은 임금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며, 농업 부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근로자 보상법에 따라 사용자는 사회보장법 2012의 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수당 지급 기준	
(a) 일시적 장애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발생 후 16일에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의 50% 지급 • 그 다음 달부터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의 33% 지급
(b) 영구 장애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월급의 36~40배를 일시불로 지급 • 200,000~600,000짖(Kyat)
(c) 유가족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월급의 36~40배를 일시불로 지급 • 150,000~450,000짖(Kyat) • 사망자 유가족에 지급



[부록]

1. 행정기관 연락처
2. 미얀마 개정 노동법 전문
3. 미얀마 국가 공휴일



부록 1. 행정기관 연락처



행정기관 연락처

부처명	Website
1. 노동이민인구부 (Ministry of Immigration & Population)	www.myanmar.com/Ministry/imm&popu/
2. 농업관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Irrigation)	www.moai.gov.mm
3. 상업부(Ministry of Commerce)	Website: www.commerce.gov.mm/
4. 통신우정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Posts and Telegraphs)	www.mpt.gov.mm
5.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	www.construction.gov.mm
6. 공보부(Ministry of Co-operative)	www.myancoop.gov.mm
7.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www.energy.gov.mm
8.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and Revenue)	www.myanmar.com/Ministry/finance
9.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www.mofa.gov.mm
10. 임업부 (Ministry of Forestry)	www.myanmar.teak.gov.mm
11. 보건부(Ministry of Health)	Website: www.moh.gov.mm
12.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	www.moha.gov.mm



부처명	Website
13. 호텔관광부(Ministry of Hotels and Tourism)	
	www.hotel-tourism.gov.mm
14.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www.industry1myanmar.com www.industry2.gov.mm
15. 정보부(Ministry of Information)	
	www.myanmar-information.net
16. 축·수산부(Ministry of Livestock-Fisheries)	
	www.myanmar.gov.mm/ministry/live&fish/default.htm
17. 광업부(Ministry of Mines)	
	www.mining.com.mm
18. 국가계획경제발전부(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www.mnped.gov.mm
19. 종교부(Ministry of Religious Affairs)	
	www.mora.gov.mm
20. 사회복지부(Ministry of Social Welfare, Relief and Resettlement)	
	www.myanmar.gov.mm/ministry/MSWRR/index.html
21. 체육부(Ministry of Sports)	
	www.mosports.gov.mm
22.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www.msports.gov.mm
23. 미얀마정보(Myanmar Information)	
	www.myanmar.com
24. 상공회의소(UMFCCI)	
	www.umfcci.com.mm

Address	Tel / Fax	Website
25. 주미얀마 연방 한국대사관		
No. 97, University Avenue, Yangon	T. (01) 527142 ~ 4 (비상전화) (01) 526-681 (대사관저) (01) 549219 F. (01) 513286	www.overseas.mofa.go.kr/mm-ko/index.do



부록 2. 미얀마 개정 노동법 전문

[비공식 번역]

산업안전보건법

(연방의회 법률 제 2019-8호)

2019년 3월 15일 연방의회는 이에 본 법률을 제정한다.



I 장: 명칭, 발효일, 정의

- 1 (a) 이 법의 명칭은 산업안전보건법이다.
(b) 이 법은 대통령이 포고로 정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 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a) **정부**란 미얀마 연방 공화국 정부를 말한다.
 - (b) **근로자**란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자신의 신체적, 지적 능력을 사용하여 생계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c) **사용자**란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체 및 산업체/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제공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산업체/기업의 창립자,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자영업자, 사용자가 허가한 관리업체, 사용자의 대리인, 사용자의 피상속인, 기업, 조합, 합자기업의 경우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지분을 받고 사용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한 자도 사용자에게 포함된다.
 - (d) **사업장**이란 이 법률 III장에 명시된 산업체/기업이 그 활동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
 - (e) **산업 사고**란 업무로 인해 또는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망 또는 부상 사고를 말한다.
 - (f) **협의회**란 이 법에 따라 정부, 사용자, 근로자 대표로 구성되는 국가산업안전보건협의회를 말한다.
 - (g) **업무상 질병**이란 협의회가 보건체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위험 사건에 대한 노출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라고 인정하고 고시한 모든 질병을 말한다.
 - (h) **산업 오염**이란 협의회가 업무로 인해 또는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위험 사건에 대한 노출로 인해 발생한 오염이라고 인정하고 고시한 모든 오염을 말한다.



- (i) **위험한 사건**이란 협의회가 사업장 내에 있는 자 또는 일반 대중이 사고 또는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는 사건이라고 인정하고 고시한 모든 사건을 말한다.
- (j) **유해 물질**이란 협의회가 이 법에 따라 유해 물질이라고 고시한 모든 물질을 말한다. 기업은 사용자의 감독과 지시에 의하여 공장, 작업장 등 지정된 장소에서 함께 일하도록 수인을 고용하는 수개의 시설로 구성될 수 있다.
- (k) **공인 자격증**이란 관할 부서장이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에게, 공식 조사관 또는 교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공인 자격증을 말한다.
- (l) **제조업자**란 이 법이 적용되는 모든 산업체/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할 목적의 유해 물질 또는 위험 기계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 (m) **수입업자 및 판매자**란 이 법이 적용되는 모든 산업체/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할 목적의 유해 물질 또는 위험 기계를 직접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 (n) **설치 및 해체업자**란 이 법이 적용되는 모든 산업체/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할 목적의 위험 기계를 설치 또는 해체하는 자를 말한다.
- (o) **건설 및 철거업자**란 이 법이 적용되는 모든 산업체/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할 목적의 공장 또는 건물을 건설 및 철거하는 자를 말한다.
- (p) **공정**이란 이 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정을 의미한다.



II 장 : 목적

3 이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산업체/기업 및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대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한다.
- (b) 사용자 및 근로자를 포함한 이 법에 따른 관계자의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업무상 질병 및 산업 사고 발생률을 줄이고 그 영향을 완화시킨다.
- (c) 이 법에 따른 관계자, 사용자, 근로자가 산업 위험 요소 및 업무상 질병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하도록 한다.
- (d) 산업 사고 및 업무상 질병의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산성과 건강을 증진한다.



- (e) 국제 표준 및 지역(ASEAN) 표준을 참고하고 미얀마의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산업안전 보건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만든다.
- (f) 산업안전보건 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한다.

III 장 : 대상 산업체/기업 지정 및 해제

4 이 법은 정부 기관, 단체, 조합, 내국인, 외국인이 개별적으로, 또는 합작을 통해 소유한 다음과 같은 산업체/기업에 적용된다.

- (a) 공장법 1951이 적용되는 공장, 공방, 창고
- (b) 상점및시설물법이 적용되는 산업체/기업
- (c) 제조 부문 산업체/기업
- (d) 기계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산업체/기업
- (e) 건설업
- (f) 토목
- (g) 광물 탐사, 보석류 탐사 및 가공
- (h) 석유 가스 산업체/기업
- (i) 항만 산업체/기업
- (j) 농업 산업체/기업
- (k) 축산 산업체/기업
- (l) 원양/근해 어업
- (m) 교육
- (n) 보건
- (o) 통신
- (p) 교통
- (q) 호텔 및 관광
- (r) 그 밖에 관할 부처가 관련 부처 및 위원회와의 협의와 정부의 승인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고 고시한 산업체/기업

5 관할 부처는 관련 부처 및 위원회와의 협의와 정부의 승인을 거쳐,

- (a) 지역, 특정 유형 및 규모의 산업체/기업을 4조의 산업체/기업으로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 (b) 4조의 산업체/기업 목록을 개정, 추가,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원형

2.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조직체계

3. 산업안전보건 감독

4. 미얀마 노동관련법

5.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체계

6. 산업제어

부록



IV 장: 협의회와 그 의무

6 정부의 의무

(a) 다음과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 연방 노동이민인구부 장관	의장
■ 건설부, 건축과 과장	위원
■ 보건체육부, 공중보건과 과장	위원
■ 보건체육부, 의료과 과장	위원
■ 천연자원환경보전부, 광산과 과장	위원
■ 전력에너지부, 미얀마석유가스공사 상무이사	위원
■ 교통통신부, 미얀마 항만공사 상무이사	위원
■ 산업부, 산업감독과 과장	위원
■ 내무부, 소방청, 청장	위원
■ 농축산관개부, 농업과 과장	위원
■ 노동이민인구부, 사회보장과 과장	위원
■ 교육부, 기술직업교육훈련과 과장	위원
■ 호텔관광부, 호텔관광행정과, 과장	위원
■ 사용자 단체 대표자 3인	위원
■ 근로자 단체 대표자 3인	위원
■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3인	위원
■ 노동이민인구부, 공장및일반노동법감독과 부과장	간사
■ 노동이민인구부, 공장및일반노동법감독과 과장	공동 간사

(b) 정부는 필요에 따라 (a)호의 협의회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

7 협의회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a) 이 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절차 수립, 검토, 재평가 및 개정한다.

(b)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안에 대한 관계 정부 부서, 공사, 국내외 기관과 협력한다.



- (c) 위험의 정도 또는 등급이 포함된 업무상 질병, 산업 오염, 위험한 사건, 유해 물질, 위험 기계, 위험 산업체/기업 및 사업장 목록을 작성하고 고시한다.
- (d) 산업 사고, 업무상 질병, 산업 오염, 중대하고 심각한 산업 사고, 위험한 사건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하고, 그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의 조치를 발표한다.
- (e) 교육 훈련 과정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과정을 포함시키도록 지시
- (f) 심사위원회 및 그 밖에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위원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장이 결정하며, 그 역할은 44조, 45조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해 조사하고 심사하는 것이다.
- (g) 협의회 의무 이행 성과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V 장: 등록

- 8** (a) 이 법이 적용되는 산업체/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안의 시행을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할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b) 관할 부처는 (a) 호의 산업체/기업 등록 대장을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 9** **산업안전보건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자 하는 관할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a) 공장 또는 건물의 건설, 확장, 철거
(b) 기계의 설치, 배치, 확장, 공정에 따른 용도 변경
- 10** **8조 (a)호에 따라 등록된 산업체/기업은 폐업, 만료, 이전, 사업 내용 변경 시 그 사실을 관할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 11** **관할 부서는 폐업, 만료, 이전, 사업 내용 변경 신고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등록 대장을 갱신해야 한다.**

1. 국가원형

2.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조직체계

3. 산업안전보건 감독

4. 미연마 노동관련법

5.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체계

6. 산업체해

부 록



Ⅶ 장 : 산업안전보건 책임자 임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립

12 사용자는 관할 부처의 부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 (a) 해당 산업체/기업의 유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면밀히 감독하기 위해 산업 안전보건 책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 (b) 그 규모가 관할 부처에서 정하는 기준을 넘어서는 산업체/기업의 경우, 해당 산업체/기업의 유형에 따라 사업체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해 동수의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해당 산업체/기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여성 근로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13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a) 산업안전보건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위원회 회의에 점검 및 검토 결과를 보고한다.
- (b) 산업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의 및 교육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조언을 제공한다.
- (c)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교육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 및 근로자와 협의하고 협력을 이끌어낸다.
- (d) 산업안전보건 관리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위험 평가를 감독한다.
- (e) 관할 부처 및 부서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 의무를 수행한다.

14 산업안전보건 책임자는 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해, 이 법률 및 이 법률에 따른 규칙, 명령, 지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Ⅶ 장 : 감독관의 임명, 수석감독관 및 감독관의 권한 및 의무

15 관할 부처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감독관을 임명할 수 있다.

1. 국가원형

2.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조직체계

3. 산업안전보건 감독

4. 미인마 노동관련법

5.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체계

6. 산업제해

부록



- 16** 감독관은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안전보건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이 법을 준수할 것을 사용자에게 명령할 수 있으며, 감독 결과를 선임감독관에게 보고한다.
- 17** 감독관은 그 업무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권한을 가진다.
- (a) 감독관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영장 없이 이 법과 관련된 모든 사업체에 언제든지 출입하여 감독 및 질의를 할 수 있다.
 - (b) 감독 대상 사업장 및 공정과 관련된 서류 및 기록을 열람, 복사, 압수할 수 있다.
 - (c) 감독 대상 사업장 및 공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을 저해할 수 있는 증거를 사진 또는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다.
 - (d) 감독 대상 사업장의 소음, 조명, 열, 냉기, 분진, 가스, 유해 물질로 인해 주변 환경에 피해를 끼친 정도 및 기간을 조사, 측정, 기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e) 산업보건과의 지원을 받아 근무 시간 중 감독 대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상 질병을 유발할 위험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질의할 수 있다.
 - (f) 근로자를 치료할 책임을 지고 있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관련 의료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산업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자에 대한 정보 또는 부검 결과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 18**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산업 사고, 업무상 질병, 위험한 사건, 중대하고 심각한 산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석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에게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업무 정지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계 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 (a) 위험한 사업장 환경, 근로자가 수행하는 안전하지 않은 작업, 유해 물질 및 위험한 기계의 존재, 사업장의 부적절하고 위험한 배치 및 기능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산업체/기업이 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b) 이 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c) 작위, 부작위, 과실, 부주의로 인해 사업장 근로자가 위험에 처한 경우
- (d) 산업 사고 또는 사고 발생이 임박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는 경우

19 감독관은:

- (a) 사용자가 18조에 따른 사업장 임시 업무 정지 명령을 준수하고, 그 원인을 시정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전체 또는 일부의 업무 재개를 승인할 수 있다.
- (b) (a)항에 따른 업무 재개 승인 사실을 관련 부서 및 사용자에게 통지한다.

20 수석감독관은:

- (a) 1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감독관을 지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 (b) 18조에 따른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임시 업무 정지와 관련하여, 사정 변경 또는 개선 상황에 따라 기간과 조건을 정하여 특정 업무 재개를 승인할 수 있다.

21 감독관:

- (a) 근로자가 신체적 부상을 입거나, 그 건강이 위험에 처하거나, 재산 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한 안에 해당 문제의 원인을 시정하고 개선할 것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 (b) 사용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a)항에 따른 지시를 이행, 완료했다는 사실을 관련 증거 기록 일체와 함께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c) 사용자가 (a)항에 따른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산업체/기업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22 선임감독관은 유해 물질이 사용되는 사업장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 감독을 실시하여 해당 유해 물질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감독관을 지명해야 한다.

23 감독관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응급 처치, 소화, 비상 시 행동 계획 및 대응 체계, 예방 계획, 22조에 따른 목록에 포함된 사업장의 위험 상황 발생 가능성 등을 교육하도록 해야 한다.

1. 국가원형

2.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조직체계

3. 산업안전보건 감독

4. 미인터 노동관련법

5.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체계

6. 산업제어

부록



- 24 선임감독관이 권한을 위임한 감독관은 누구나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관할 법원에 고발할 수 있다.
- 25 선임감독관 및 감독관은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공장, 공방, 산업체/기업, 시설물, 기업과 관련된 어떠한 업무에도 관여할 수 없다.

 **Ⅷ 장 : 등록**

26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 (a) 사업장, 공정, 기계, 자재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b) 사업장 및 주변 환경의 위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 (c) 절차에 따라 공인의가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검진을 통해 업무상 질병 발병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 (d) (a), (b), (c)호의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및 보건이 확보될 때까지 사업장을 개선시켜야 한다.
- (e) 관할 부서에서 결정하고 승인한 보호의, 개인보호장비, 보호 시설을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업무 중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f) 예방 계획 및 비상 상황 대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g) 관할 부처에서 정한 근로자 수 기준을 넘어서는 규모의 모든 산업체/기업은 의료시설을 설치하고, 공인의와 간호사를 임명하고, 필요한 약품과 지원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 (h) 관리자, 근로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사용자 자신이 관할 부서가 업무 종류에 따라 지정한 산업안전보건 훈련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 (i) 근로자에게 산업 사고가 발생하거나, 근로자의 건강이 위험에 처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산업안전보건 책임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 (j) 사업장 또는 공정에서 사용되거나 발생하는 자재, 기계, 폐기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k) 산업 사고 발생 위험이 임박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고, 필요한

1. 국가원형

2.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조직체계

3. 산업안전보건 감독

4. 미인마 노동관련법

5.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체계

6. 산업제해

부록



구조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근로자들을 안전한 다른 사업장으로 재배치해야 한다.

- (l)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안내문, 위험 표지판, 공고, 포스터, 안전보건 지시서를 사업장에 부착해야 한다.
- (m) 위험 사업장의 제한 구역을 출입할 때는 필요한 주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 (n) 관할 부처에서 발행한 산업안전보건 지식, 기술, 정보 안내서 및 지침서를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자에게 배포하고, 산업안전보건 인식 및 지식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 (o) 화재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가 소화기를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p) 선임감독관 및 감독관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질의를 하고, 필요한 문서 및 기록을 요구하고, 증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q) 위험한 산업체/기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정해진 근무 시간 동안만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 (r)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27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다:

- (a) 공인외가 진단서를 통해 업무상 상해 또는 질병을 확인하기 전인 경우
- (b) 근로자가 위험하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 (c)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을 한 경우
- (d) 근로자가 산업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의 발생이 임박한 상황에서 근무를 거부한 경우

28 업무상 사고로 상해를 입었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사회보장법 2012의 적용대상이 아닐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능력 감소 정도와 장애 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9 사용자는

- (a) 산업체/기업의 성격과 필요에 따라 실시한 공인외에 의한 건강 검진 결과 정해진 건강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근로자의 근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b) (a) 호에 따라 근무가 금지 또는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근로자를 원래 직책 또는 사업장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 (c) 임신했거나 수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0 근로자는

- (a) 관할 부서가 산업안전보건을 목적으로 정하고, 사용자가 지급한 개인보호의 및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기계 및 장비를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
- (b) 이 법과 관련 규칙에 따른 사용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 책임자의 지시 및 조언을 준수해야 한다.
- (c) 산업안전보건 지시, 표지, 포스터, 공지, 경고, 금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d) 장비, 기계, 기계의 일부, 차량, 전기, 그 밖에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자재를 안전하게 사용 및 취급해야 한다.
- (e) 근로자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자기 자신이나 다른 근로자의 안전 보건의 위험받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f)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사용자, 산업안전보건책임자에게 협력해야 한다.
- (g) 산업안전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또는 사건을 발견한 경우, 직접 또는 상급자를 통해 즉시 그 사실을 사용자, 산업안전보건책임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 (h)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작업을 계속할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단,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안전한 사업장으로 재배치한 경우, 작업을 거부할 수 없다.
- (i) 노동 조직 또는 근로자들 간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협력과 연락을 위해 사업장 별로 산업 안전보건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다.



IX 장 :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설치 및 해체 업자, 건축 및 철거 업자

- 31 유해 물질 또는 위험한 기계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설치 및 해체 업자, 유해 물질 또는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는 시설이나 사업장의 건축 및 철거 업자는 공식 조사관 또는 관할 부서에서 안전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 32 유해 물질 또는 위험한 기계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 (a) 유해 물질 또는 위험한 기계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b) 안전 보건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 33 설치 및 해체 업자, 건축 및 철거 업자는 안전 보건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X 장 : 통지, 감독, 신고

- 34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 (a) 산업 사고, 위험한 사건 또는 중대하고 심각한 산업 사고 발생 시 관할 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b) 근로자가 규정된 업무상 질병에 걸렸거나, 오염 물질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인이가 작성한 의료 기록과 함께 관할 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35 규정된 업무상 질병에 걸린 전현직 근로자를 치료한 공인이는 규정된 사실 관계를 담은 보고서를 사용자, 관할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그 사본을 보건체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 36**
 - (a) 감독관은 산업 사고, 위험한 사건, 업무상 질병, 산업 오염이 발생한 경우, 필요에 따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b) 누구도 수석감독관의 승인 없이 산업 사고, 위험한 사건, 업무상 질병, 산업 오염과 관련된 자재, 기계, 장비, 배치도, 문서, 표지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 은폐, 첨가, 변경할 수 없다.
 - (c) (b)호의 규정은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 및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 또는 그와 관련된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d) 선임 감독관은 (b)호에 따른 금지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재, 기계, 장비, 배치도, 문서, 표지판의 제거, 해체, 추가,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원형

2.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조직체계

3. 산업안전보건 감독

4. 미인터 노동관련법

5.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체계

6. 산업재해

부록



- 37** 협의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험한 사건, 업무상 질병, 중대하고 심각한 산업 사고를 조사할 수 있다.
- 38** 37조에 따라 구성된 조사 위원회는
 - (a) 3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 (b) 조사를 위해 관계자를 소환하여 질의하고 진술서를 받을 수 있다.
 - (c) 필요한 문서, 통계, 계약, 증거, 서류, 샘플을 요구할 수 있다.
 - (d) 정해진 기한 내에 조사 결과, 평가, 권고를 포함한 보고서를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XI 장 : 공인 조사관 및 교관의 활동, 훈련 센터 운영

- 39** 공인 조사관 또는 교관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관할 부서장에게 공인 자격증 또는 등록 자격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훈련 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 40** 관할 부서장은
 - (a) 규정에 따라 39조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공인 자격증 또는 등록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b) (a)호에 따른 공인 자격증 또는 등록 자격증을 발급한 경우, 신청자에게 관할 부처에서 결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 (c) 공인 자격증 또는 등록 자격증이 발급된 자를 그 신청 내용에 따라 각각 공인 조사관, 교관, 훈련 센터 설립자로 등록해야 한다.
- 41** (a) 40조 (b)호에 따라 공인 자격증 또는 등록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그 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자격증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부서장에게 자격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 (b) 관할 부서장은 (a)호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관련 조항에 따라 갱신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한다. 신청서가 갱신 기준에 부합될 경우, 관할 부서장은 관할 부처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자격증을 갱신해야 한다.

1. 국가원형

2.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조직체계

3. 산업안전보건 감독

4. 미인터 노동관련법

5.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체계

6. 산업제해

부록



- 42 (a) 공인 조사관은 위험한 기계를 조사한 결과 안전 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계의 사용자에게 안전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 (b) 공인 조사관, 교관, 훈련 센터 설립자는 관할 부서가 정한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ⅩⅡ 장 : 행정 업무

43 관할 부서장은

(a) 다음과 같은 경우 공인 조사관, 교관, 훈련 센터 설립자의 업무 정지를 통지해야 한다.

- 공인 조사관, 교관, 훈련 센터 설립자 자격증 신청 시 부정확 정보를 제출한 경우
- 대상자가 공인 조사관, 교관, 훈련 센터 설립자로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경우
- 관할 부서의 규칙을 위반한 경우

(b) 공인 조사관, 교관, 훈련 센터 설립자에게 (a)호에 따른 업무 정지 통지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에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c) 공인 조사관, 교관, 훈련 센터 설립자의 (b)호에 따른 소명이 신뢰할 수 없거나 업무 재개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경우, 행정 절차에 따라 정해지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공인 자격증 또는 등록 자격증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ⅩⅢ 장 : 이의 신청

- 44 (a) 18조에 따른 감독관의 명령 또는 21조 (c)호에 따른 업무 정지 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해당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회가 구성한 심사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b) 심사 위원회는 (a)호에 따른 이의 신청을 검토하여, 감독관의 명령을 승인, 수정,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원형

2.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조직체계

3. 산업안전보건 감독

4. 미연마 노동관련법

5.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체계

6. 산업제해

부록



- 45 (a) 관할 부서장의 43조에 따른 행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b) 심사 위원회는 (a)호에 따른 이의 신청을 검토하여, 관할 부서장의 처분을 승인, 수정, 취소할 수 있다.
- 46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이에 대해 다룰 수 없다.
- 47 43조에 따른 공인 자격증 또는 등록 자격증 취소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인 조사관, 교관, 훈련 센터 설립자가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이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심사 위원회가 관할 부서장의 45조 (b)호에 따른 결정을 승인한 경우, 30일이 경과한 날 또는 결정이 승인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관할 부서에 반납해야 한다.

XIV 장: 금지

- 48 (a) 누구도 관할 부처에 등록하지 않고 이 법이 적용되는 산업체/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
(b) 누구도 관할 부서에 통지 없이 이 법이 적용되는 건물, 시설의 건축, 확장, 재건축, 기계의 설치, 확장,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
(c) 누구도 관할 부서장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 없이 공인 조사관 또는 교관으로 활동하거나, 등록 자격증 없이 훈련 센터 설립자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

49 사용자

- (a) 18조에 따른 사업장 업무 정비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 (b) 20조 (b)호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c) 21조 (a)호에 따른 감독관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 (d) 26조 (q)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요구할 수 없다.
- (e) 26조 (r)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 50 누구도 수석감독관의 승인 없이 36조 (b)호에 위반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1. 국가원형

2.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조직체계

3. 산업안전보건 감독

4. 미인터 노동관련법

5.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체계

6. 산업제해

부록



- 51** 이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 정보를 그 의무를 수행하는 기간 및 그 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공개할 수 없다. 단, 이 규정은 재판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XV 장: 처벌 규정**

- 52** 1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 책임자는 3개월 이하의 구금 또는 500,000원 이상 1,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병과할 수 있다.
- 53** 12조, 26조 (a)~(p)호, 27조, 29조 (b)호, 29조 (c)호를 위반한 사용자는 3개월 이하의 구금 또는 1,000,000원 이상 5,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병과할 수 있다.
- 54** 30조 (a), (b), (c), (d), (f), (h)호를 위반한 근로자는 3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5** 고의적으로 30조 (e), (g)호를 위반한 근로자는 3개월 이하의 구금 또는 1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병과할 수 있다.
- 56** 31, 32, 33조를 위반한 제조업자, 수출업자, 판매업자, 설치 또는 해체 업자, 건설 또는 철거 업자는 3개월 이하의 구금 또는 1,000,000원 이상 5,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병과할 수 있다.
- 57** 34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1개월 이하의 구금 또는 2,000,000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병과할 수 있다.
- 58** 35조를 위반한 공인원은 5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9** (a) 42조 (b)호를 위반한 공인 조사관은 3개월 이하의 구금 또는 1,000,000원 이상 5,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병과할 수 있다.
 (b) 42조 (b)호를 위반한 교관은 500,000원 이상 1,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 42조 (b)호를 위반한 훈련 센터 설립자는 1,000,000원 이상 5,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국가원형

2.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조직체계

3. 산업안전보건 감독

4. 미인터 노동관련법

5.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체계

6. 산업제해

부록



60 누구든지

- (a) 48조 (a), (b)호를 위반한 자는 1,000,000원 이상 5,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B) 48 (c)호를 위반한 자는 3개월 이하의 구금 또는 5,000,000원 이상 1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병과할 수 있다.

61 (a) 49조 (a), (b), (c)호를 위반한 사용자는 3개월 이하의 구금 또는 3,000,000원 이상 5,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병과할 수 있다.

- (b) (a)호에 따른 처벌 후에도 위반 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위반 행위가 계속되는 날 하루 당 최대 100,000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62 49조 (d), (e)호를 위반한 사용자는 3개월 이하의 구금 또는 2,000,000원 이상 5,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병과할 수 있다.

63 50조를 위반한 자는 3개월 이하의 구금 또는 3,000,000원 이상 1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병과할 수 있다.

64 이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가 50조를 위반한 경우, 3개월 이하의 구금 또는 3,000,000원 이상 1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병과할 수 있다.

65 이 법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자는 3개월 이하의 구금 또는 2,000,000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병과할 수 있다.

XVI 장 : 산업안전보건 예방 활동

66 협의회는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관할 부처의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시행해야 한다.

- (a) 산업안전보건 증진 캠페인 및 관련 활동
- (b) 산업안전보건 관련 연구, 교육 활동
- (c) 산업안전보건 발전 및 개선 활동을 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협력

1. 국가원형

2.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조직체계

3. 산업안전보건 감독

4. 미인터 노동관련법

5.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체계

6. 산업제어

부록



- 67 연방 비상 사태 시, 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간 동안 이 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는 고시를 할 수 있다.
- 68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실무 위원회, 조사 위원회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 69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실무 위원회, 조사 위원회, 심사 위원회 위원에게는 정부가 정한 수당 및 보수가 지급된다.
- 70 관할 부처는 협의회와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하고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 7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실무 위원회의 경비는 관할 부처의 예산으로 부담한다.
- 72 관할 부처는 수석감독관의 직무를 보좌하는 부수석감독관을 임명할 수 있다.
- 73 (a) 관할 부처는 정부의 승인을 거쳐 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b) 협의회와 관할 부처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통지, 명령, 지시를 하거나 업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c) 관할 부서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명령 및 지시를 할 수 있다.

미얀마 연방 공화국 헌법에 따라 이에 서명한다.

미얀마 연방 공화국
 대통령
 윈 민(Win Myint)

공지

이 번역본은 미얀마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며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본 법률해석에 따른 어떤 법적 소송, 민사 또는 행정소송 등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 및 해설은 미얀마 법에 따라 관련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3. 미얀마 공휴일

날자	내용	비고
1. 4.	독립기념일	
2. 12.	Union Day	
3. 2.	농민의 날	
3. 27.	국군의 날	
5. 1.	노동절	
7. 19.	순교자의 날	
12. 25.	성탄절	
변동	꺼인족 새해	미얀마력에 따라 매해 변동
	따바웅족 대보름	
	띤잔(미얀마 신년 및 물축제)	
	까송족 대보름	
	와소족 대보름	
	따딘쭈족 대보름	
	따자웅몽족 대보름	
	국경일	
	Idul Alhwaha	
	Deepa Vail	

1. 국가원형

2.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조직체계

3. 산업안전보건 감독

4. 미얀마 노동관련법

5.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체계

6. 산업재해

부
록



참고자료



- ① 미얀마 개황: 2019. 8., 외교부, 2019
- ② OSH System in Myanmar and Provisions related to Safety Certification in OSH Law, 2019
- ③ KOTRA Country Report: 미얀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7
- ④ 외교부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overseas.mofa.go.kr/mm-ko/index.do)
- ⑤ Myanmar Nationa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file – 2018, ILO
- ⑥ Fellowship Policy Development Workshop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 the Region of South-East Asia, 2015
- ⑦ 미얀마 진출기업 인사 노무관리 성공전략, 노사발전재단, 2014
- ⑧ Myanmar Nationa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file – 2010, ILO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

미얀마편

- | 발행일 | 2019년 12월 발행
- | 발행인 | 박두용
- | 발행처 | 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센터
- | T E L | (052) 703-0743
- | F A X | (052) 703-0326

※ 공단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비매품]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

미얀마편



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 Tel. 052-7030-743 Fax. 052-7030-326

※ 공단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비매품>